제344호 / 2010년 2월 12일

	기 관 의 장
선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익산시장 발행처 : 비전홍보담당관

	【 규 칙 】 익산시규칙 제494호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훈 령 】 익산시훈령 제309호 익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5									
	【 고 익산시고시	· -) 및 실시겨 형도면 고시		7		
	【 입법여]고]								
•	익산시공고 익산시공고 익산시공고 익산시공고 익산시공고	제2010-20 제2010-22 제2010-22 제2010-22	운용조)9호 익산시 입법여 10호 익산시 11호 익산시 25호 익산시	:례 전부개점 행정기구설 고 지방공무원 사무전결치 립도서관 운 시립도서관	성에 따른 입설치조례 시 난 정원규칙 서리규칙 일 ·영 관리조려 · 운영 관리	주민 지역기 실법예고 … 행규칙 일투 일부개정규칙 부개정안 입 일부개정조 조례 시행규	·····································	: ······· 39 고 ····· 44 ······ 59 『고 ···· 66		
	. 익	산시청 홈페이	지 http://www	/ iksan go kr	· 비전홍보담	당관 TEL : 06	3) 859–5029			
회 람										

•	익산시공고	제2010-233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6
•	익산시공고	제2010-236호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00
•	익산시공고	제2010-242호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3
•	익산시공고	제2010-250호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18
		_	
	【 공	고】	
	【공	고】	
		_	↓위키기미 기체계히 스키 코크 100
	익산시공고	_ 제2010-164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정 공고 123
	익산시공고	_ 제2010-164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정 공고 ···································
•	익산시공고 익산시공고	_ 제2010-164호 제2010-165호	
•	익산시공고 익산시공고 익산시공고	~ 제2010-164호 제2010-165호 제2010-227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정 공고 128

익산시규칙 제494호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이 한 수

2010년 2월 12일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다만, 신청 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출입구로 한다.

-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자동판매기의 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 (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지정취소·폐업신고)
 -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 추첨 방법 및 일시·장소
 - 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목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③ 공고는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같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익산시훈령 제309호

익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익 산 시 장

2010년 2월 12일

익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익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 중 부서별 행정지원과란 합계 및 단순노무원 소계 "5"를 각각 "4"로 하고, 같은 란 단순노무원현장공사작업등현업인부 "2"를 "1"로 하며, 청소과란 다음에 환경위생과란 및 합계·단순노무원 소계·현장 공사작업등현업인부 "1"을 각각 신설하고, 도시미관과란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원과란 및 합계·단순노무원 소계·단순잡역조무인부 "1"을 각각 신설하며, 함열읍란 합계 및 단순노무원 소계 "2"를 "1"로 하고, 같은 란 단순노무원단순 잡역조무인부 "1"을 삭제한다.

별표 2 무기계약전환자 정수표 중 부서별 문화관광과란 및 합계·무기계약전 환자 소계·현장작업등 현업인부 "1"을 각각 삭제하고, 함열읍란 합계 및 무기계약전환자 소계 "1"을 각각 "2"로 하며, 같은 란 무기계약전환자 현장작업등 현업인부 "1"을 신설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행 현

정 안 개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제15조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제15조 관련)

LTH A	٦.
1 124 77	- 1
しさか	⊥ .

ΔΙПΗ	단순노무원								
업무별 부서별	합계	소계	시설물 장바유지 관리!부	현장공사 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집역 조무인부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비 고
합계	133	73	10	17	4	42	34	26	
행정지원과	<u>5</u>	<u>15</u>		2		3			
청소과									
<u><신 설></u>	<신설>	<신설>		<신설>					
도시미관과									
<신 설>	<신설>	<신설>				<신설>			
함열읍	2	<u>2</u>	1			1			

' ' '	' ' -		,	, -					
4) 71 10			단			-3-43			
업무별 부서별	합계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부	현장공사 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집역 조무인부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비고
합계					-				
행정지원과	<u>4</u>	<u>4</u>		1		-			
청소과									
환경위생과	1	1		1					
도시미관과									
<u>보건소</u> 보건지원과	1	1				1			
함열읍	1	1	-			<삭제>			
			•						_

[별표2]

[별표2]

무기계약전환자 정원표(제16조제2항 관련) 무기계약전환자 정원표(제16조제2항 관련)

업무별	1		무기계약전환자							
부서별	합계	소계	업무 보조	청소 인부	현장직업등 현업인부	영양사	의료 급여 관라사	비고		
합 계	56	56	31	14	9	1	1			
문화관광과	1	1			<u>1</u>					
함열읍	1	1		1	<u><신설></u>					

합계	소계		청소 인부	현장직업등 현업인부	영양사	의료 급여 관리사	비고
				_	-	-	
<삭제>	<u><</u> 삭제>			<u><삭제></u>			
2	2		1	1			
		소계 < <u>삭</u>	소계 업무 보조 <식제	합계	합계 성무 청소 현장직업등 보조 인부 현업인부 	소계 업무 정소 현장작업등 영양사 - <식계	합계





익산시고시 제2010-15호

익산 금마(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며, 익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익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익 산 시 장

금마(전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농공단지 지정(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익산 금마(전문)농공단지

나.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번지 일원

다. 면적 : 328,756m² → 314,871m² 감) 13,885m²

2. 농공단지의 지정 목적

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의 공업입지 제공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익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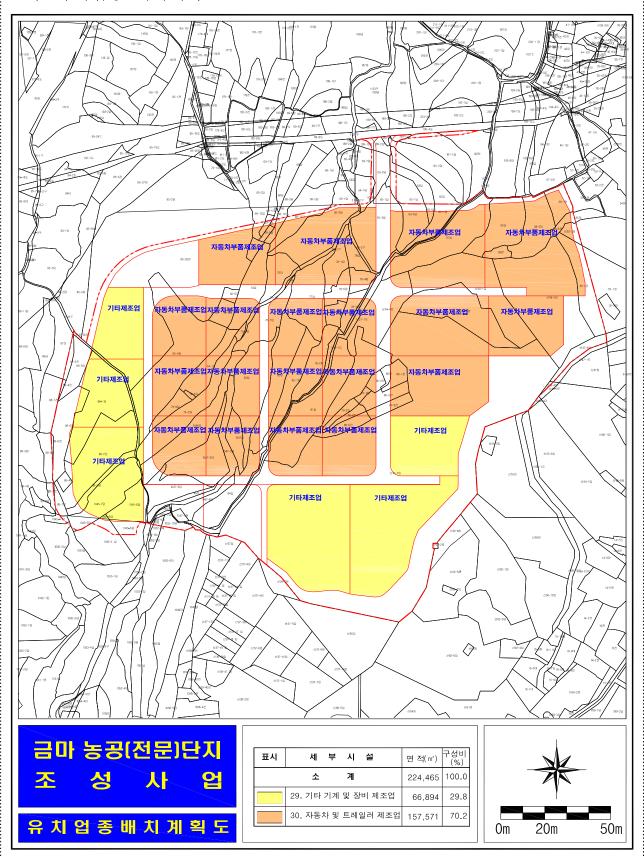
4. 농공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7년 ~ 2010년 → 2007년~ 2011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익산시 🏹 시보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지목별 및 소유자별 현황

구	분	총	계	국	공유지	사	유 지
	七	필지수	면적(m²)	필지수	면적(m²)	필지수	면적(m²)
· · · · · · · · · · · · · · · · · · ·	기정	110	328,756	14	9,725	96	319,031
	변경	117	314,871	12	6,905	105	307,966
답	기정	63	112,551	4	1,551	59	111,000
H H	변경	74	114,061	4	1,551	70	112,510
전	기정	16	13,342	-	_	16	13,342
신 	변경	16	13,330	-	_	16	13,330
임 야	기정	17	192,586		_	17	192,586
∃ %	변경	15	180,023	-	_	15	180,023
대 지	기정	2	1,260		_	2	1,260
네시	변경	2	1,260	-	_	2	1,260
도 로	기정	5	7,551	5	7,551	_	_
工工	변경	3	4,753	3	4,753	-	_
구 거	기정	3	889	1	46	2	843
1 /1	변경	3	867	1	24	2	843
유 지	기정	1	102	1	102	-	_
	변경	1	102	1	102	_	_
제 방	기정	1	122	1	122	_	_
^II 78	변경	1	122	1	122	_	_
하 천	기정	2	353	2	353	_	_
<u> </u>	변경	2	353	2	353	_	_

나. 용도지역 계획

구	분	면	적	(m²)	구성비	비고
T	亡	기 정	변경	변경후	(%)	비고
	소 계	214,192	증) 100,679	314,871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203	감) 1,203	_	_	
	생산관리지역	_	_	_	_	
	계획관리지역	212,989	증) 101,882	314,871	100.0	
농 림	지 역	100,679	감) 100,679	_	_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₁	m^{2})	구성비	비고
一	기 정	변경	변경후	(%)	미끄
총계	328,756	감)13,885	314,871	100.0	
공 장 시 설 부 지	250,935	감)26,470	224,465	71.3	
공 공 시 설 부 지	64,205	증) 8,925	73,130	23.2	
도 로	31,152	감) 1,015	30,137	9.6	
차폐및완충녹지	23,670	증)19,323	42,993	13.6	
소 공 원	9,383	감) 9,383	_	_	
지 원 시 설 부 지	13,616	증) 3,660	17,276	5.5	
공 동 이 용 시 설	7,104	감) 1,179	5,925	1.9	
폐수종말처리장	5,312	증) 1,022	6,334	2.0	
배 수 지	1,200	감) 1,200	_	_	
유 수 지	_	증) 5,017	5,017	1.6	

라. 주요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m²)	비고
一 一 元	기 정	변 경	변경후	11 17
도 로	31,152	감) 1,015	30,137	
녹 지	23,670	증)19,323	42,993	
소공원	9,383	감) 9,383	_	폐지
공동이용시설	7,104	감) 1,179	5,925	관리사,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5,312	증) 1,022	6,334	폐수종말처리장
배수지	1,200	감) 1,200	_	폐지
유수지	_	증) 5,017	5,017	저류지

마. 용수시설계획(광역상수도 이용)

- 당초 : 송·배수관로 : 3,950m(배수지 : Q=300㎡/일)

- 변경 : 송·급수관로 : 4,760m(배수지 : 폐지)

바. 하수도시설계획

- 당초 : 7,175m(우수관로 : 5,635m, 오수관로 : 1,540m) - 변경 : 4,361m(우수관로 : 2,786m, 오수관로 : 1,575m)

사. 폐수처리시설계획

- 당초 : 370㎡/일 - 변경 : 350㎡/일





- 7.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 계획 : 기본계획서 참조
- 8. 수용사용할 토자·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
-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경영개발과(☎ 063-859-452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2.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익산 금마(전문)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성 명: 익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시청로 1(남중동 60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개발 및 기술의 고도화로 지역 전문산업의 육성
- 산업 구조의 개편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 확충
- 나. 사업의 개요
 - 주요 유치업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용 도 별	계	공장용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시설	비고
면적(m²)	314,871	224,465	73,130	17,276	_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번지 일원

나. 면 적 : 314,871 m²

익산시 💯 시보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07년 ~ 2011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 결정(변경) 조서

7	ㅂ		Ę	면 적 (m²)	구성비	ul —
子	분		기 정	변경	변경후	(%)	비고
	소	계	214,192	증) 100,679	314,871	100.0	
관리지역	보전관	·리지역	1,203	감) 1,203	-	_	
선디지크	생산관	·리지역	-	_	-	_	
	계획관	·리지역	212,989	증) 101,882	314,871	100.0	
농	림지역		100,679	감) 100,679	_	_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o) =]	용도	지역	면 적	용적률	거기(배거)기 ()
번 호	기정 변경 (m²) (%)		(%)	결정(변경)사유		
1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47-2번지 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1,203	150%이하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 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8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00,679	150%이하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토지이용의합리화를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구 역 명	· 역 명 위 치 -		면 적(m²)			
ा च	변호	1 4 8	T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변경	금마1	금마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일원	328,756	감) 13,885	314,871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²)	결정(변경)사유
변경	금마1	금마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일원	328,756 → 314,871 (삼13,885)	- 도평천(소하천) 정비계획의 선형변경 및 지방도 722호선의 선형 변경에 따른 진입부분 반영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역변경

- 다.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도시계획시설)

① 교통시설

① 도로

☑ 총괄표

7 H	ı	합 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m²)									
합 계		6	1,977	30,137	1	473	9,628	2	368	5,846	3	1,136	14,663
중 로	!	5	1,868	29,211	1	473	9,628	1	259	4,920	3	1,136	14,663
소 로	<u>!</u>	1	109	926	_	_	-	1	109	926	_	-	-





익산시 纄 시보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규류별	<u>!</u> 번호	군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m)								
	총		계		_	1,977	_	_	_	_	_	
신설	중로	1	1	20	집산도로	473	동고도리 190-4도	동고도리 산34-3임	일반도로	_	-	
신설	중로	2	1	19	국지도로	259	동고도리 78-3답	동고도리 85-29임	일반도로	_	-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190	동고도리 산34-4임	동고도리산 34-2임	일반도로	_	_	
신설	중로	3	2	12	국지도로	698	동고도리 85-29임	동고도리 산34-3임	일반도로	_	_	
신설	중로	3	3	12	국지도로	248	동고도리 75답	동고도리 산34-3임	일반도로	_	_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109	동고도리 산34-3임	동고도리 산34-3임	일반도로	_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1-1	- 노선신설 - 규모 : L=473m, B=20m	- 농공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함
_	중로 2-1	- 노선신설 - 규모 : L=259m, B=19m	- 농공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함
-	중로 3-1	- 노선신설 - 규모 : L=190m, B=12m	- 농공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함
	중로 3-2	- 노선신설 - 규모 : L=698m, B=12m	- 농공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함
_	중로 3-3	- 노선신설 - 규모 : L=248m, B=12m	- 농공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함
_	소로 2-1	- 노선신설 - 규모 : L=109m, B=8m	- 농공단지와 주변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로 설치로 소통능력 향상



② 공간시설

①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7 H	도면	11 21 - 1	시설의	A) -1		면 적(m²)	최초	w) =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2	<u> </u>	계	_	-	_	증)39,504	39,504	_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임 일원	-	증)30,571	30,571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금마면 동고도리 86-3임 일원	_	증)1,785	1,785	_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금마면 동고도리 88-7전 일원	_	증)7,148	7,148	_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	완충녹지	면적 : 30,571 m²	- 단지와 주변 지역간 완충 Open Space 제공
2	완충녹지	면적 : 1,785㎡	- 단지와 주변 지역간 완충 Open Space 제공
3	완충녹지	면적 : 7,148m²	- 단지와 주변 지역간 완충 Open Space 제공

③ 방재시설

①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m)	(m)	(m²)	결정일	비고
신설	1	하천	소하천 (도평천)	동고도리 86-3 일원	동고도리 1045-3 일원	금마 농공단지	279	12.5	3,489	_	

☑ 하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하 천 (소하천)	- 연장 : 279m - 폭원 : 12.5m - 면적 : 3,489㎡	- 단지내를 관통하는 기존 소하천(도평천)을 선형 변경 함으로서 금마 농공단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결정함





②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도면 ² 분 표시 시설명		시설명 위치 위치		면 적(m²)	최초	비고		
1 4	번호	/ N 크 ' 8	세분	11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125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금마면 동고도리 1047-3 일원	-	증)5,017	5,017	_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유수지	- 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1047-3 일원 - 면적 : 5,017㎡	- 집중강우로 인한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 설치

④ 환경기초시설

①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초			비고
1 正	변호	기'큰'8	세분	71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41-12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처 리시설	금마면 동고도리 84답 일원	_	증)6,334	6,334	_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폐수종말 처리시설	- 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84답 일원 - 면적 : 6,334㎡	- 공장 폐수·오수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 시설 설치





익산시 **조** 시보 제344호 / 2010년 2월 12일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구	면적		획 지		nj –	
번호	(m²)	번 호	위 치	면적(m²)	비고	
총계	284,734	_	-	284,734		
		1	금마면 동고도리 66-3 번지 일원	13,970		
		2	금마면 동고도리 73 번지 일원	7,961		
		3	금마면 동고도리 85-29 번지 일원	5,925		
		4	금마면 동고도리 85-29 번지 일원	6,371		
		(5)	금마면 동고도리 86-1 번지 일원	8,395	 가구내 획지의	
1	78,920	6	금마면 동고도리 86-2 번지 일원	12,525	분할 • 합병	
		7	금마면 동고도리 1047-3 번지 일원	5,017	가능	
		8	금마면 동고도리 84 번지 일원	6,334		
		9	금마면 동고도리 86-3 번지 일원	1,785		
		10	금마면 동고도리 88-7 번지 일원	7,148		
		11)	금마면 동고도리 86-3 번지 일원	3,489		
		1	금마면 동고도리 85-9 번지 일원	6,072		
		2	금마면 동고도리 85-8 번지 일원	5-8 번지 일원 5,981		
2	36,910	36 910	3	금마면 동고도리 83 번지 일원	6,275	가구내 획지의 분할·합병
	30,310	4	금마면 동고도리 85-9 번지 일원	6,275	가능	
		5	금마면 동고도리 1046 번지 일원	6,081		
		6	금마면 동고도리 1047 번지 일원	6,226		
		1	금마면 동고도리 77 번지 일원	5,964		
		2	금마면 동고도리 78-6 번지 일원	5,964		
3	36,930	3	금마면 동고도리 82-1 번지 일원	6,275	가구내 획지의 분할·합병	
	30,330	4	금마면 동고도리 79 번지 일원	6,275	가능	
		5	금마면 동고도리 81 번지 일원	6,226		
		6	금마면 동고도리 80-6 번지 일원	6,226		
		1	금마면 동고도리 61 번지 일원	14,118		
		2	금마면 동고도리 58-2 번지 일원	16,458		
		3	금마면 동고도리 산34-8 번지 일원	11,425		
		4	금마면 동고도리 산34-2 번지 일원	8,592	 가구내 획지의	
4	131,974	(5)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11,207	분할ㆍ합병	
		6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8,279	가능	
		7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15,389		
		8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15,935		
		9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30,571		



익산시 🏹 시보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0)	ピコョ	게 메린	0 -	<u> </u>	나게 큰	'용식물'효이에 판안 도시판디계획 결정 소시							
도면 번호	위 가 구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8]	Ę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0 -		권 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_	1	1, 2	건	頙	율	60%							
			क्	적	륟	150%							
			높		이	5층							
			9 0	도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0		권 장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_	1	4,5,6	건 폐 율		율	60%							
			୍ପର	용 적 률		150%							
			높		이	5층							
			용	도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권 장	수질오염방지시설(도시계획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_	1	8	8	8	8	8	8	8	8	건	珥	율	30%
											용	적	률
			노		(ه	3층							
			숑	도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0		권 장	공동이용시설(관리사) 및 부대시설							
-	1	3	건	<u></u> 폐 율		30%							
			용	용 적		100%							
			높		0]	3층							



도면 번호	위 가 구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u> </u>	Γ: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8	工	권 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_	2	①, ②, ③, ④, ⑤, ⑥.	건	Ī	율	60%				
		0, 0.	용	조	률	150%				
			높	٥]		5층				
			Ω	_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u>유</u>	工	권 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_	3	①, ②, ③, ④, ⑤, ⑥.	건	폐 율		60%				
		0, 0.	용	적 률		150%				
			높		0]	5층				
			용	L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70	جالہ	권 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_	4	(1,2,3) ,4,5	건	Ĭ	율	60%				
			8	적 률		150%				
			높		0]	5층				
			용	도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ठ	工	권 장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_	4	6,7,8	건	Ī	율	60%				
			용	ろ	률	150%				
			높		0]	5층				

익산시 🎒 시보

4)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 토지이용 계획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m²)	번 호	위치	계획내용	(전면도로)
		1	동고도리 66-3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2-1
		2	동고도리 73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2-1
		3	동고도리 85-29 번지 일원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중로3-2
		4	동고도리 85-29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5)	동고도리 86-1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1	78,920	6	동고도리 86-2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7	동고도리 1047-3 번지 일원	유수지	중로3-2
		8	동고도리 84 번지 일원	수질오염방지시설	중로3-2
		9	동고도리 86-3 번지 일원	녹지용지(완충녹지)	중로1-1
		10	동고도리 88-7 번지 일원	녹지용지(완충녹지)	_
		11)	동고도리 86-3 번지 일원	하천	_
		1	동고도리 85-9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36,910	2	동고도리 85-8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3
2		3	동고도리 83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3
2		4	동고도리 85-9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5)	동고도리 1046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6	동고도리 1047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3
		1	동고도리 77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3
		2	동고도리 78-6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1-1
3	36.030	3	동고도리 82-1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1-1
J	36,930	4	동고도리 79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3
		(5)	동고도리 81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3
		6	동고도리 80-6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1	동고도리 61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1
		2	동고도리 58-2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1
		3	동고도리 산34-8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1
		4	동고도리 산34-2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1
4	131,974	(5)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1-1
		6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7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8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공업용지	중로3-2
		9	동고도리 산34-3 번지 일원	녹지용지(완충녹지)	중로1-1





- ② 교통 처리 계획
 - 차량출입 불허 구간에 관한 계획
 - 도로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블록별 차량출입 불허 구간을 지정한다.
 - 주차 진입출을 동시에 불허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제2종지구단위 계획 중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경미한 사항	비고
	_	금마 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항 및 시행령 제25조 4항,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	
l		계획 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	

- ※ 익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 게재생략
-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금마 농공단지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시 사항

1) 명칭 : 익산 금마(전문)농공단지

2)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번지 일원

3) 면적 : 314,871 m²

※ 지형도면 및 전산자료 : 게재생략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
- 9.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경영개발과(☎ 063-859-452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익산시 🕰 시보

『붙 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금마(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련	토지	소재지	,	-3	1.77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면	리	지	번	지목	(m²)	(m²)	성 명	주 소
계	11	7필지				349,600	314,871		
1	금마	동고도	55	- 3	전	443	443	안성수	금마면 동고도리 35-6
2	금마	동고도	55	- 4	전	3,200	3,200	파평윤씨종중	창인동 1가114-55
3	금마	동고도	58	- 1	답	1,233	1,233	장진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125
4	금마	동고도	58	- 2	답	3,455	3,455	이정임	영등동 신일아파트 104-708
5	금마	동고도	59		전	529	529	이원섭	창인동1가 229-3
6	금마	동고도	60		답	3,990	3,990	이원섭	창인동1가 229-3
7	금마	동고도	61		답	5,864	5,864	임창빈	군산시 소룡동 233
8	금마	동고도	62		답	1,640	135	박경환	금마면 동고도리 195
9	금마	동고도	62	- 1	답	1,391	1,391	박경환	금마면 동고도리 195
10	금마	동고도	63		답	1,103	138	박영태	금마면 동고도리 195
11	금마	동고도	63	- 1	답	1,524	364	김병숙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1-1
12	금마	동고도	63	- 2	답	1,088	1,088	나상기	757
13	금마	동고도	63	- 5	답	226	226	박영태	금마면 동고도리 195
14	금마	동고도	63	- 6	답	1,878	1,878	김병숙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1-1
15	금마	동고도	63	- 7	답	932	120	나상기	757
16	금마	동고도	63	- 8	답	59	56	나상기	757
17	금마	동고도	64	- 1	답	992	179	지성욱	687
18	금마	동고도	65	- 1	답	556	556	김병숙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1-1
19	금마	동고도	65	- 2	구	301	301	임판성	금마면 동고도리 51
20	금마	동고도	65	- 3	답	4,912	4,912	김병숙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1-1
21	금마	동고도	66	- 2	구	542	542	지태순	금마면 동고도리 687
22	금마	동고도	66	- 3	답	4,646	4,574	지성옥	송파 오금동 현대 38-904
23	금마	동고도	68	- 4	답	116	66	심재춘	금마면 동고도리 221
24	금마	동고도	68	- 5	답	188	188	심재춘	금마면 동고도리 221
25	금마	동고도	68	- 11	답	1,798	1,250	유영우	경남 마산 양덕 한일타운4차 402-801
26	금마	동고도	68	- 12	답	567	363	이덕남	금마면 동고도리 749
27	금마	동고도	69	- 3	답	248	164	심재춘	금마면 동고도리 221
28	금마	동고도	69	- 13	답	694	262	김완용	금마면 동고도리 221
29	금마	동고도	73	_	답	407	407	심재춘	금마면 동고도리 221
30	금마	동고도	74	-	답	3,088	3,088	노상룡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3-1
31	금마	동고도	74	- 1	답	1,987	1,987	지성욱	금마면 동고도리 687
32	금마	동고도	74	- 2	답	4,410	4,410	심옥섭	금마면 동고도리 555
33	금마	동고도	74	- 3	유	102	102	국(농림수산식품부)	
34	금마	동고도	74	- 4	답	1,088	1,088	지성욱	금마면 동고도리 687
35	금마	동고도	75	-	답	1,841	1,841	노상룡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3-1
36	금마	동고도	75	- 1	답	519	519	노상룡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3-1
37	금마	동고도	75	- 2	답	165	165	심옥섭	금마면 동고도리 587





익산시 🎒 시보

일련	토지	소재지	7]	นไ		기ㅁ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지	번	-	지목	(m²)	(m²)	성 명	주 소
38	금마	동고도	76	_		답	50	50	국(농람수산식품부)	
39	금마	동고도	76	_	1	답	2,886	2,886	김순덕	금마면 동고도리 610-1
40	금마	동고도	77	_		답	4,354	4,354	이종창	이리시 창인동 1가 74
41	금마	동고도	78	_		답	813	813	이달원	금마면 동고도리 산26
42	금마	동고도	78	_	1	답	1,712	1,712	소병만	금마면 서고도리 138-4
43	금마	동고도	78	-	2	답	2,327	2,327	최우열	부송동 91
44	금마	동고도	78	_	3	답	883	883	이달원	금마면 동고도리 산26
45	금마	동고도	78	_	4	답	902	902	이달원	금마면 동고도리 산26
46	금마	동고도	78	_	5	답	1,055	1,055	소병만	금마면 서고도리 138-4
47	금마	동고도	78	_	6	답	734	734	소병만	금마면 서고도리 138-4
48	금마	동고도	79	_		답	3,696	3,696	지성욱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49	금마	동고도	79	_	1	답	205	205	이달원	금마면 동고도리 26
50	금마	동고도	79	_	2	답	536	536	지성옥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51	금마	동고도	80	_		전	288	288	이달원	금마면 동고도리 26
52	금마	동고도	80	_	1	전	800	800	이달원	금마면 동고도리 산26
53	금마	동고도	80	-	2	전	506	506	이달원	금마면 동고도리 26
54	금마	동고도	80	-	3	전	1,207	1,207	이달원	금마면 동고도리 26
55	금마	동고도	80	-	4	전	499	499	지성옥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56	금마	동고도	80	-	5	전	853	853	지성욱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57	급	동고도	80	-	6	전	1,051	1,051	지성욱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58	금마	동고도	81	-		답	6,896	6,896	지성욱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59	금마	동고도	82	-		답	4,615	4,615	지성욱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60	금마	동고도	82	-	1	답	2,724	2,724	지성옥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61	금마	동고도	83	_		답	5,481	5,481	이영복	영등동 692-11
62	금마	동고도	84	_		답	2,955	2,955	김순덕	금마면 동고도리 610-1
63	금마	동고도	85	_	5	대	367	367	지태순	금마면 동고도리 687
64	금마	동고도	85	_	8	대	893	893	지태순	금마면 동고도리 687
65	금마	동고도	85	_	9	임	10,935	10,935	지태순	금마면 동고도리 687
66	금마	동고도	85	- 2	29	임	37,153	25,485	지성옥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67	금마	동고도	86	-	1	임	6,205	6,205	강성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03-17
68	금마	동고도	86	_	2	임	6,737	6,737	강성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03-17
69	금마	동고도	86	_	3	임	1,693	1,693	강성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03-17
70	금마	동고도	86	_	4	임	321	321	강성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03-17
71	금마	동고도	86	-	5	임	962	962	강성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03-17
72	금마	동고도	86	_	6	전	2,982	2,982	강성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03-17
73	금마	동고도	87	-	2	전	355	355	지성옥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74	금마	동고도	88	-	3	전	317	30	소병만외1인	금마면 서고도리 138-4 외
75	금마		88	_	4	전	80	80	소병만외1인	금마면 서고도리 138-4 외
76	금마	동고도	88	-	6	전	103	103	소병만외1인	금마면 서고도리 138-4 외
77	금마	동고도	88	_	7	전	437	404	소병만외1인	금마면 서고도리 138-4 외

<u>\$\lambda\</u>



익산시 💯 시보

일련	토지	소재지	1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4			(m ²)	(m²)	성 명	주 소	
78	금마	동고도	189	- 2	답	396	396	이은영	익산갈산동 로얄맨션 나동 101호	
79	금마	동고도	189	- 4	답	102	102	이은영	익산갈산동 로얄맨션 나동 101호	
80	금마	동고도	189	- 10	답	329	129	이은영	익산갈산동 로얄맨션 나동 101호	
81	금마	동고도	190	- 1	답	168	166	장신영	649	
82	금마	동고도	191	- 1	답	2,783	207	심재덕	588	
83	금마	동고도	191	- 2	답	3,058	104	박일환	569	
84	금마	동고도	192	-	답	2,852	213	이순상	인천시부평구부평동755-111	
85	금마	동고도	1045	- 1	답	3,329	392	오연수	송파가락동 미륭아파트 103-904	
86	금마	동고도	1045	- 2	답	3,702	12	소병만	서고도리138-4	
87	금마	동고도	1045	- 3	답	528	515	오병감	왕궁면 도순리 269-1	
88	금마	동고도	1045	- 4	답	329	68	오연수	송파가락동 미륭아파트 103-904	
89	금마	동고도	1045	- 5	답	1,431	632	오길수	경기 성남 은행동 공원아트빌라 332호	
90	금마	동고도	1045	- 6	답	47	47	오연수	송파 가락동 미륭아파트 103-904	
91	금마	동고도	1045	- 7	답	3,459	3,459	오병감	왕궁면 도순리 269-1	
92	금마	동고도	1045	- 8	답	1,945	1,945	오길수	경기 성남 은행동 공원아트빌라 332호	
93	금마	동고도	1046	-	답	4,592	4,592	임석재 외 6인	금마면 동고도리 72 외	
94	금마	동고도	1047	-	답	1,319	1,319	정인현	창인동1가 227-1	
95	금마	동고도	1047	- 1	답	317	317	국(기획재정부)		
96	금마	동고도	1047	- 2	답	4,099	4,099	오병곤	금마면 동고도리 367	
97	금마	동고도	1047	- 3	답	2,598	2,598	최병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5-18	
98	금마	동고도	1047	- 4	천	241	241	국(국토해양부)		
99	금마	동고도	1047	- 5	답	2,251	2,251	정인현	창인동 1가 227-1	
100	금마	동고도	1047	- 6	답	1,091	1,091	국(기획재정부)		
101	금마	동고도	1052	-	천	112	112	국(국토해양부)		
102	금마	동고도	1052	- 7	답	93	93	국(국토해양부)		
103	금마	동고도	1052	- 8	답	16	16	홍경의	왕궁면 왕궁리 232	
104	금마	동고도	1052	- 9	제	122	122	국(건설교통부)		
105	금마	동고도	1052	- 10	답	517	517	홍경의	왕궁면 왕궁리 232	
106	금마	동고도	1121	- 1	도	2,409	2,409	국(국토해양부)		
107	금마	동고도	1131	- 30	도	929	929	국(국토해양부)		
108	금마	동고도	1132	- 1	도	1,415	1,415	국(국토해양부)		
109	금마	동고도	1133	- 2	구	46	24	국(국토해양부)		
110	금마	동고도	산32	- 2	임	532	532	경주최씨종중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35-3	
111	금마	동고도	산34	- 1	임	7,636	7,636	지성옥	금마면 동고도리 687	
112	금마	동고도	산34	- 2	임	13,388	13,388	임판성외 3인	전주시 팔복동 2가 35-16 외	
113	금마	동고도	산34	- 3	임	94,711	94,711	지성옥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114	금마	동고도	산34	- 4	임	4,364	4,364	지성옥	송파 오금동 현대아파트 38-904	
115	금마	동고도	산34	- 8	임	5,851	5,851	오병곤	금마면 서고도리 376	
116	왕궁	왕궁	산47	- 2	임	1,109	1,109	전동규외 3인	논산시 강경읍 남교동 14 외	
117	왕궁	왕궁	산48	- 4	임	94	94	김천룡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51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 금마(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ul ÷	≀ ⊸ો ⊸ો	~l ul	ㅁ기머	र्राष्ट्री हो उन	편입물량	소	ען דו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m²)	성 명	주 소	비고
			하우스	6.6*4	26.4			
	금마면 동고도리	86-2	하우스	12.15*4.4	53.46		금마면 동고도리 85	
1			하우스	6*4.1	24.6	국영환		
			하우스	44.7*4.15	185.51			
			하우스	45.5*4.5	204.75			
			하우스	23*6	138			
			하우스	12.2*3.5	42.7			
			창고	7*3.2	22.4			
			창고	3.3*1.1	3.63			
			창고	3.3*3.9	12.87			
			창고	4.2*2	8.4			
			창고	3.3*2.7	8.91			
	금마면 동고도리		창고	3.3*2.7	8.91			
			계사	4*3	12			
			우사	3.6*7.5	27			
			화장실	3*1.7	5.1			
			철골	2.7*2.5	6.75			
			장독대	2*2	4			
		85-9	마당	2.7*2.7	7.29			
			개수대	2*2	4	국영환	금마면 동고도리 85	
			관정	_	1식			
2			견사	1.5*1	1식			
			견사	1*1	1식			
			대문	_	1식			
			오동나무	_	1주			
			사철나무	_	1주			
			철쭉	_	4주			
			앵두나무	_	3주			
			회양목	_	2주			
			골단초	_	- 1주			
			주목	_	1주			
			청매화	-	1주			
			두릅	-	1식			
			대추나무	-	1주			
			뽕나무	-	5주			
			엄나무	-	1주			
			오가피		5주			





익산시 💯 시보

							^ 1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물량 (m²)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3	금마면 동고도리	85-9	주택	16*4.5	82	지성욱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A 38동 904호	
4	금마면	산34-3	폐가	17.8*4	71.2	지성욱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_ T	동고도리	0.04 0	폐가	7.4*4	29.6	7107	현대A 38동 904호	
5	금마면 동고도리	61	관정	_	1식	임창빈	군산시 소룡동 나우 하이츠A 101호	
6	금마면	58-1	마	-	1,233	, , 거 취	익산시 금마면	
0	동고도리	30-1	견사	-	2식	소경희	동고도리 51	
7	금마면 동고도리	55-3	소나무	_	1주	윤한국	익산시 부송동 우남A 101 동218호	
8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매실나무	-	1주	지성욱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A 38동 904호	
9	금마면 동고도리	80-5	농업용관정	_	1식	국영환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85	
	금마면		소나무	_	36주	윤한국	익산시 부송동 우남A 101동 218호	
10	동고도리	55-4	잔디	_	1,653			
	금마면		퇴비	_	1식		익산시 창인동 1가	
11	동고도리	60	관정	_	1식	이원섭	229-3	
12	금마면 동고도리	74-2	관정	_	1식	심옥섭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87	
13	금마면 동고도리	74	관정	_	1식	노상룡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3-1	
14	금마면 동고도리	81	관정	_	1식	국영환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85	
15	금마면 동고도리	84	관정	-	1식	김순덕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610-1	
16	금마면 동고도리	86-2	마	_	450	국영환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85	
17	금마면 동고도리	86-6	더덕 등	_	660	국영환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85	
18	금마면 동고도리	85-5	대나무	_	367	지성욱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A 38동 904호	
19	금마면 동고도리	85-8	대나무	_	893	지성욱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A 38동 904호	
20	금마면 동고도리	85-9	대나무	-	10,745	지성욱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A 38동 904호	
21	금마면 동고도리	85-29	대나무	-	37,153	지성욱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A 38동 904호	
22	금마면 동고도리	산34-2	상석	1*0.8*0.1	1식	임판성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5-16	
23	금마면 동고도리	산34-2	노가주나무	-	1주	임판성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5-16	
24	금마면 동고도리	산34-8	전나무	-	2주	정영자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388-1	
25	금마면 동고도리	산34-8	향나무	-	1주	정영자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388-1	



익산시공고 제2010-169호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익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고함)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을 하기 위함
-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 기한 3월이내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명시 함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두도록 함(안제6조,제7조,제8조,제9조)
-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함.(안제14조)
- 다. 종전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3월 이내로 하던 것을 80일 이내로 하도록 함.(안제19조)
- 라. 주변지역 주민의 필요한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도록 함 (안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 견 제 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0-753 익산시 시청로 1번지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전화: 063-859-5347, FAX: 063-859-5072)
-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5.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장묘시설 담당자에게 전화(859-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1. 장사업무담당국장(당연 임명직)
 - 2. 장사업무담당과장(당연 임명직)
 - 3.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 4. 변호사
 - 5. 회계사 또는 세무사
 - 6.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통장 또는 주민 3분의 2이상 추천자 각 1명)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협의체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3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원의 목적
 - 2. 지원기간
 -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 4. 지원사업의 종류·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담당과장
 - 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담당주사
 -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 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계획 제출) ①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회의록
 -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제17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제4조 관련)

구 분	지 원 사 업
1. 소득향상	○ 농림업, 축산업 시설의 설치 ○ 상·공업시설의 설치
2. 복지증진	 ○ 의료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도로시설의 설치 ○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 운동·오락시설의 설치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기타사업	○ 학자금 지원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제14조 관련)

(단위 : 원)

												_ '		ر نــا
		예			금		((또	인 는 예금	출 해지)		1	, II		
월 일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예금기관	적	<u>\$</u>	금	액	잔	액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제14조 관련)

(단위 : 원)

						, ,		
월 일	적	Ġ.	수 령 자	지 급 액	잔	액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제14조 관련)

(단위 : 원)

	년													
열	일	적	Ġ.	수	령	자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익산시공고 제2010-20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2월12일익산시장

1. 개정 이유

부서간 사무의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행정의 권한과 근거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업무 신설(안 제8조 및 제10조)
 - 1) 징 수 과 : 등기부상 "익산시"로 압류된 압류물건 해제
 - 2) 지식정보과 : 민원콜센터 운영 전반
- 나. 업무 조정(안 제11조 및 제33조)
 - 1)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업무: 행정지원과 → 재난안전과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 751 익산시 시청로 1 익산시 행정 지원과(전화 : 859-5731, FAX : 859-505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 (전화: 859-573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부서간 사무의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행정의 권한과 근거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업무 신설(안 제8조 및 제10조)

- 1) 징 수 과 : 등기부상 "익산시"로 압류된 압류물건 해제
- 2) 지식정보과 : 민원콜센터 운영 전반

나. 업무 조정(안 제11조 및 제33조)

1)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업무: 행정지원과 → 재난안전과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여

나. 예 산 수 반 여 부: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34호를 제3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등기부상 "익산시"로 압류된 압류물건 해제 제10조 중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민원콜센터 운영 전반

제11조 중 제48호를 삭제한다.

제33조 중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레크 레크 네크	- 레1フ - 레7フ (최레기 가 O)
제1조 ~ 제7조 (생략)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제8조(징수과)
분장한다.	
1. ~ 33. (생략)	1. ~ 3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4. 등기부상 "익산시"로 압류된 압류
	물건 해제
<u>34</u> . (생략)	<u>35</u> . (현행 제34호와 같음)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식정보과)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제10조(지식정보과)
사항을 분장한다.	
1. ~ 45. (생략)	1. ~ 45. (현행과 같음)
<u><신 설></u>	46. 민원콜센터 운영 전반
제1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제11조(행정지원과)
사항을 분장한다.	
1. ~ 47. (생략)	1. ~ 47. (현행과 같음)
48.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업무	<u>〈삭 제〉</u>
49. ~ 68. (생략)	49. ~ 68.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32조 (생략)	제12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제33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제33조(재난안전과)
사항을 분장한다.	
1. ~ 40. (생략)	1. ~ 40. (현행과 같음)
<u><신 설></u>	41.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제34조 ~ 제45조 (생략)	제34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

익산시공고 제2010-210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2월12일익산시장

1. 개정 이유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단일계급 장기근무자 사기 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직종 조정(안 별표)

1) 기능직 △2 → 일반직 +2

나. 직급 조정(안 별표)

- 1) 일반직 6급 + 8, 일반직 7급 $\triangle 5$, 일반직 8급 $\triangle 3$
- 2) 기능직 7급 + 3. 기능직 8급 + 4. 기능직 10급 △7

다. 직렬 조정(안 별표)

- 1) 농업연구사 △1 → 농업·수의연구사 +1
- 2) 환경7급 △2 → 공업·환경7급 + 2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 751 익산시 시청로 1 익산시 행정지원과 (전화 : 859-5731, FAX : 859-505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 (전화: 859-5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합계란 본청 "626"을 "627"로 하고. 사업소 "197"을 "196"으로 하며, 일반직 계란 합계 "1.086"을 "1.088"로 하고, 본청 "520"을 "522"로 하며, 일반직 6급 소계란 합계 "267"을 "275"로 하고, 본청 "132"를 "138"로 하며, 보건소 "9"를 "11"로 하고, 일반직 6급 행정란 다음에 일반직 6급 전산란 및 합계·본청 "1"을 각각 신설하며, 일반직 6급 공업란 합계 "7"을 "9"로 하고, 본청 "3"을 "5"로 하며, 일반직 6급 시설란 합계 "20"을 "21"로 하고, 본청 "16"을 "17"로 하며, 일반직 6급 간호란 합계 및 보건소 "1"을 각각 "2"로 하고, 일반직 6급 간호란 다음에 일반직 6급 의료기술란 및 합계·보건소 "1"을 각각 신설하며, 일반직 6급 사회복지란 합계 및 본청 "1"을 각각 "2"로 하고, 일반직 6급 행정· 녹지란 합계 및 본청 "2"를 각각 "3"으로 하며, 일반직 7급 소계란 합계 "332"를 "327"로 하고, 본청 "174"를 "170"으로 하며, 보건소 "25"를 "23"으로 하고, 사업소 "39"를 "40"으로 하며, 일반직 7급 전산란 합계 및 본청 "2"를 각각 "1"로 하고, 일반직 7급 공업란 합계 "19"를 "20"으로 하며, 사업소 "9"를 "10"으로 하고, 일반직 7급 녹지란 합계 및 본청 "3"을 각각 "2"로 하며, 일반직 7급 간호란 합계 및 보건소 "8"을 각각 "7"로 하고, 일반직 7급 의료기술란

합계 및 보건소 "4"를 각각 "3"으로 하며, 일반직 7급 환경란 합계 "5"를 "3"으로 하고, 본청 "2"를 "1"로 하며, 사업소 "3"을 "2"로 하고. 일반직 7급 시설란 합계 "40"을 "39"로 하며. 본청 "34"를 "33"으로 하고. 일반직 7급 사회복지란 합계 "24"를 "23"으로 하며, 본청 "7"을 "6"으로 하고, 일반직 7급 공업·환경란 합계 "2"를 "4"로 하며, 본청 및 사업소 "1"을 각각 "2"로 하고, 일반직 8급 소계란 합계 "277"을 "274"로 하며, 본청 "139"를 "137"로 하고. 사업소 "31"을 "30"으로 하며. 일반직 8급 공업란 합계 "20"을 "17"로 하고. 본청 "10"을 "8"로 하며. 사업소 "10"을 "9"로 하고. 일반직 9급 소계란 합계 "127"을 "129"로 하며, 본청 "41"을 "43"으로 하고. 일반직 9급 시설란 합계 "16"을 "17"로 하며. 본청 "8"을 "9"로 하고, 일반직 9급 사회복지란 다음에 일반직 9급 통신란 및 합계·본청 "1"을 각각 신설하며, 연구사란 농업연구 합계 및 농업 기술센터 "2"를 각각 "1"로 하고, 농업연구란 다음에 농업·수의연구란 및 합계·농업기술센터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직 계란 합계 "227"을 "225"로 하고, 본청 "100"을 "99"로 하며, 사업소 "68"을 "67"로 하고, 기능직 7급 소계란 합계 "31"을 "33"으로 하며, 본청 "14"를 "13"으로 하고, 사업소 "12"를 "13"으로 하며, 면 "2"를 "3"으로 하고, 동 "1"을 "2"로 하며, 기능직 7급 전기란 합계 "3"을 "4"로 하고, 사업소 "1"을 "2"로 하며, 기능직 7급 사무란 합계 "11"을 "12"로 하고, 동 "1"을 "2"로 하며, 기능직 7급 조무란

합계 "3"을 "4"로 하고, 면 "1"을 "2"로 하며, 기능직 7급 통신란을 삭제하고, 기능직 8급 소계란 합계 "40"을 "44"로 하며, 사업소 "17"을 "19"로 하고, 면 "2"를 "4"로 하며, 기능직 8급 전기란 합계 "6"을 "7"로 하고, 사업소 "3"을 "4"로 하며, 기능직 8급 기계란 합계 "12"를 "13"으로 하고, 사업소 "9"를 "10"으로 하며, 기능직 8급 사무란 합계 "8"을 "9"로 하고, 면 "1"을 "2"로 하며, 기능직 8급 조무란 합계 "8"을 "9"로 하고, 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9급 소계란 합계 "75"를 "74"로 하고, 사업소 "21"을 "20"으로 하며, 기능직 9급 운전란 합계 "21"을 "20"으로 하고, 사업소 "3"을 "2"로 하며, 기능직 10급 소계란 합계 "74"를 "67"로 하고, 사업소 "15"를 "12"로 하며, 면 "13"을 "10"으로 하고. 동 "9"를 "8"로 하며. 기능직 10급 전기란 합계 "7"을 "5"로 하고, 사업소 "4"를 "2"로 하며, 기능직 10급 기계란 합계 "8"을 "7"로 하고, 사업소 "7"을 "6"으로 하며, 기능직 10급 사무란 합계 "33"을 "31"으로 하고, 면 및 동 "4"를 각각 "3"으로 하며, 기능직 10급 조무란 합계 "25"를 "23"으로 하고, 면 "9"를 "7"로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9 -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č	행						개		7	3		안			
[별	표]											[별	표]									
		익	산시 기	시방공	무원	정원포	또 (제2	조 관	련)				익	산시 기	기방공	무원	정원포	E(제2	조 관	련)		
직급.	기 직렬별	관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ド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동
	합 계		1,395	<u>626</u>		116	53	<u>197</u>		178	170		합 계		<u>627</u>				<u>196</u>			
ē	l 반직	계	<u>1,086</u>	<u>520</u>		87		124		158	153	Ę]반직 계	1,088	<u>522</u>							
6급	소	계	<u>267</u>	<u>132</u>		9						6급	소 계	<u>275</u>	<u>138</u>		11					
	<u><신</u>	설>											<u>전 산</u>	<u>1</u>	<u>1</u>							
	공	업	<u>7</u>	<u>3</u>									공 업	9	<u>5</u>							
		_																				
	시	설	<u>20</u>	<u>16</u>									시 설	<u>21</u>	<u>17</u>							

(3
1.1

			Ř	<u>l</u>		č	행						개		ろ	}		안		
직급.	7 직렬별]관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卜	직급.	기 직렬별	관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F _o
	간	호	1		1						간	호	2			2				
	<u><신</u>	설>									<u>의료</u> 7	<u>]술</u>	1			1				
	사회	복지	1	1							사회복	루지	<u>2</u>	2						
		-										-								
	행정.	녹지	2	2							행정·≒	千지	<u>3</u>	<u>3</u>						
												_								
7급	소	계	<u>332</u>	<u>174</u>	<u>25</u>		<u>39</u>			7급	소 7	계	<u>327</u>	<u>170</u>		<u>23</u>		<u>40</u>		
		_										-								
	전	산	<u>2</u>	2							전	산	<u>1</u>	1						
		_										_								
	공	업	<u>19</u>				9				공	업	<u>20</u>					<u>10</u>		
												_								
	녹	지	<u>3</u>	<u>3</u>							녹	지	2	2						
	간	ই	<u>8</u>		<u>8</u>						간	ই	7			7				



(3	I
1	н

		ক্	1		č	행					개		7	d d		안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뇽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동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3			<u>3</u>				
	환 경	<u>5</u>	2			<u>3</u>				환 경	3	1				<u>2</u>		
	시 설	40	34							시 설	<u>39</u>	<u>33</u>						
	사회복지	<u>24</u>	7							사회복지	<u>23</u>	<u>6</u>						
	공업·환경	<u>2</u>	1			1				공업·환경	<u>4</u>	<u>2</u>				<u>2</u>		
8급	소 계	277	139			<u>31</u>			8급	소 계	274	<u>137</u>				<u>30</u>		
	공 업	20	10			<u>10</u>				공 업	<u>17</u>	8				9		
9급	소 계	127	41						9급	소 계	129	<u>43</u>						





		ğ	<u>l</u>		č	행					개		ろ	}		안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卜	직급·2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卜
	시 설	<u>16</u>	8							시 설	<u>17</u>	9						
	사회복지									사회복지								
	<u><신설></u>	0	<u>0</u>							<u>통 신</u>	<u>1</u>	1						
Ó	연구직 계	7			2				ć	!구직 계								
연구	소 계	7			2				연구	소 계								
사									사									
	농업연구	2			2					농업연구	1				1			
	<u><신설></u>	0			<u>0</u>					<u>농업·수의</u> 연구	1				1			
7]능직 계	227	100			<u>68</u>	20	17	フ	능직 계	<u>225</u>	<u>99</u>				<u>67</u>		



M :	ı
(2)	

			현]		į	행					개		ろ	3		안		
직급.	7 직렬별]관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卜	직급·2	기관별 식렬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동
7급	소	계	<u>31</u>	14			<u>12</u>	2	1	7급	소 계	<u>33</u>	<u>13</u>				<u>13</u>	<u>3</u>	2
	전	기	<u>3</u>				1				전 기	4					2		
		-																	
	사	무	<u>11</u>						<u>1</u>		사 무	<u>12</u>							<u>2</u>
	조	무	<u>3</u>					1			조 무	4						<u>2</u>	
	<u>통</u>	신	1	1							<u><삭제></u>								
8급	소	계	<u>40</u>				<u>17</u>	2		8급	소 계	44					<u>19</u>	4	
	전	7]	<u>6</u>				<u>3</u>				전 기	7					<u>4</u>		
	7]	계	<u>12</u>				9				기 계	<u>13</u>					10		
		_																	
	사	무	<u>8</u>					<u>1</u>			사 무	9						<u>2</u>	
	조	무	<u>8</u>					2			조 무	9						<u>3</u>	
		_																	





		현		į	행					개		7	ğ		안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동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면	동
9급	소 계	<u>75</u>			<u>21</u>			9급	소 계	<u>74</u>					<u>20</u>		
	운 전	21			3				운 전	<u>20</u>					2		
10급	소 계	74			<u>15</u>	<u>13</u>	9	10급	소 계	<u>67</u>					<u>12</u>	<u>10</u>	<u>8</u>
	전 기	7			4				전 기	<u>5</u>					2		
	기 계	8			7				기 계	7					<u>6</u>		
	사 무	33				<u>4</u>	4		사 무	<u>31</u>						<u>3</u>	<u>3</u>
	조 무	<u>25</u>				9			조 무	<u>23</u>						7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법 규 명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직급조정
 - ▶ 일반직 6급 + 8. 일반직 7급 △5. 일반직 8급 △3
 - ▶기능직 7급 + 3. 기능직 8급 + 4. 기능직 10급 △7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195,123		
1. 인 건 비	168,437		
			6급 : 2,210,900원 × 12월 × 8명 = 212,246,400
		일 - 반	7급 : 2,028,500원 × 12월 ×△5명 = △121,710,000
키 키버.ㄱ		8급 : 1,330,900원 × 12월 ×△3명 = △47,912,400	
가. 기본급	121,368	- 7급 : 1,949,700원 × 12월 × 3명 = 70	7급: 1,949,700원 × 12월 × 3명 = 70,189,200
		기 -	8급: 1,627,400원 × 12월 × 4명 = 78,115,200
		-	10급: 828,100원 × 12월 ×△7명 = △69,560,400
			6급: 2,210,900원 × 100% × 8명 = 17,687,200
		일 반	7급: 2,028,500원 × 100% ×△5명 = △10,142,500
1 カラムロ	10 114		8급: 1,330,900원 × 100% ×△3명 = △3,992,700
나. 정근수당	10,114	_	7급: 1,949,700원 × 100% × 3명 = 5,849,100
		기 -	8급: 1,627,400원 × 100% × 4명 = 6,509,600
			10급: 828,100원 × 100% ×△7명 = △ 5,796,700

익산시 🏹 시보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6급: 130,000원 × 12월 × 8명 = 12,480,0						
		일 반 - 7급: 130,000원 × 12월 × △5명 = △7,800,000						
בן קבונסטן			- 8급: 120,000원 × 12월 × △3명 = △4,320,000					
다. 교통보조비	0		- 7급: 130,000원 × 12월 × 3명 = 4,680,000					
		기 능	- 8급: 120,000원 × 12월 × 4명 = 5,760,000					
			-10급: 120,000원 × 12월 × △7명 = △10,080,000					
			- 6급 : 2,210,900원 × 120% × 8명 = 21,224,640					
		일 반	- 7급: 2,028,500원 × 120% ×△5명 = △12,171,000					
라. 명절휴가비	19 196	- 8급: 1,330,900원 × 120% ×△3명 = △4,791,240						
다 장실하 [P]	12,136	- 7급: 1,949,700원 × 120% × 3명 = 7,018,920						
		기 능	- 8급: 1,627,400원 × 120% × 4명 = 7,811,520					
			-10급: 828,100원 × 120% × △7명 = △6,956,040					
		٥١	- 6급: 2,210,900원 × 200.4% × 8명 = 35,445,140					
		일 반	- 7급: 2,028,500원 × 200.4% ×△5명 = △20,325,570					
-) -d-d-d-d-d-d-d-d-d-d-d-d-d-d-d-d-d-d-	00.000		- 8급: 1,330,900원 × 200.4% ×△3명 = △8,001,370					
마. 가계지원비	20,268		- 7급: 1,949,700원 × 200.4% × 3명 = 11,721,600					
		기 능	- 8급: 1,627,400원 × 200.4% × 4명 = 13,045,230					
		J	-10급: 828,100원 × 200.4% × △7명 = △11,616,580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6급 : 2,210,900원 × 0.03 × 15 × 8명 = 7,959,240
		일 반	- 7급 : 2,028,500원 × 0.03 × 15 ×△5명 = △4,564,120
		_	- 8급: 1,330,900원 × 0.03 × 15 ×△3명 =△1,796,710
바. 연보생기	4,551		- 7급 : 1,949,700원 × 0.03 × 15 × 3명 = 2,632,100
		기 능	- 8급: 1,627,400원 × 0.03 × 15 × 4명 = 2,929,320
		Ó	-10급: 828,100원 × 0.03 × 15 × △7명 = △2,608,510
2. 물 건 비	3,370		
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0		
나.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0		
			- 6급 : 140,000원 × 12월 × 8명 = 13,440,000
		일 반	- 7급 : 140,000원 × 12월 × △5명 = △8,400,000
다. 직급보조비	3,370		- 8급 : 105,900원 × 12월 × △3명 = △3,812,400
	0,010		- 7급 : 140,000원 × 12월 × 3명 = 5,040,000
		기 능	- 8급 : 105,900원 × 12월 × 4명 = 5,083,200
			-10급: 95,000원 × 12월 × △7명 = △7,980,000
3. 이전경비	23,316		
			- 6급 : 2,210,900원 × 130% × 8명 = 22,993,360
가. 성과상여금	7,350	일 반	- 7급 : 2,028,500원 × 130% × △5명 = △13,185,250
		만	- 8급 : 1,330,900원 × 130% × △3명 = △5,190,510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7급 : 1,949,700원 × 130% × 3명 = 7,603,830
		기능	- 8급 : 1,627,400원 × 130% × 4명 = 8,462,480
		_	-10급: 1,465,200원 × 130% × △7명 = △13,333,320
			- 6급 : 212,080원 × 12월 × 8명 = 20,359,680
		일 반	- 7급 : 195,290원 × 12월 × △5명 = △11,717,400
J AJJHEJJ	1111		- 8급 : 137,530원 × 12월 × △3명 = △4,951,080
나. 연금부담금	11,111	- 7급 : 167,850원 × 12월 × 3명 = 6,042,600	
		기 능	- 8급 : 154,950원 × 12월 × 4명 = 7,437,600
		O	-10급: 72,140원 × 12월 × △7명 = △6,059,760
			- 6급 : 88,430원 × 12월 × 8명 = 8,489,280
		일 반	- 7급 : 81,400원 × 12월 × △5명 = △4,884,000
다. 국민건강			- 8급 : 64,760원 × 12월 × △3명 = △2,331,360
다. 국간(20 보험료	4,855		- 7급 : 93,720원 × 12월 × 3명 = 3,373,920
		기 능	- 8급 : 77,940원 × 12월 × 4명 = 3,741,120
			-10급 : 42,060원 × 12월 × △7명 = △3,533,040

※ 직급기준

- 일반직 : 6급 18호봉, 7급 19호봉, 8급 8호봉

- 기능직 : 7급 17호봉, 8급 14호봉, 10급 3호봉



익산시공고 제2010-211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1. 개정 이유

부서간 기능 조정 및 사무 신설에 따른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사무전결 범위를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 사무전결 범위 조정(안 별표 1)
- 나. 지식정보과에 "민원콜센터 운영" 사무전결 범위 신설(안 별표 1)

3. 의견 제출

-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 751 익산시 시청로 1 익산시 행정지원과 (전화 : 859-5731, FAX : 859-505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 (전화: 859-573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부서간 기능 조정 및 사무 신설에 따른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사무전결 범위를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 사무전결 범위 조정(안 별표 1)
- 나. 지식정보과에 "민원콜센터 운영" 사무전결 범위 신설(안 별표 1)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

나. 예 산 수 반 여 부: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 지식정보과 소관 단위업무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	2 2 2 2	7	기안자	및 전	년 결권	자-	시장
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 장	결재
지식 정보	7. 민원 콜센터	1. 민원콜센터 기본계획 수립		기안			0	
과	운영	2. 민원콜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0		
		3. 민원콜센터 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기안		0			
		4. 민원콜센터 상담자료(DB) 및 상담 프로그램 관리	기안		0			
		5. 민원콜센터 운영 결과 분석 및 반영	기안			0		
		6. 민원콜센터 청사 관리	기안		0			
		7. 민원콜센터 위·수탁 계약		기안			0	
		8. 민원콜센터 위·수탁 운영관리	기안			0		

행정지원과 소관 단위업무 제36호를 삭제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단위업무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よ 司			7	 기안자	 및 전	 년결권>	~ 자	3] ZL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 장	시장 결재
재난 안전	15. 국가기반 체계보호	1. 기반체계보호 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집행		기안			0	
과	,, ,,,,,,,,,,,,,,,,,,,,,,,,,,,,,,,,,,,,	2. 기반체계보호 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 발령	기안				0	
		3.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 보고	기안			0		
		4. 기반체계보호 관련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지역안정대책본부 구성 운영	기안				0	
		5.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 명령	기안				0	
		6. 특별 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원	기안				0	
		7. 위험지구 설정	기안			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형	À								개 정 안						
[별3	포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	4조기	제1호	항 괸	<u> </u> 년)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단위	·			기안자 및 전결:				소관	단위		기안자	자 및 전결권자			시장	
부서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담당	과장	국장	부 시장	시장 결재	부서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 자	당 담당	과장	국장		결재	
지식 정보	1. ~ 6. (생략)								지식 정보	1. ~ 6. (현행과 같음)							
과	<u><신설></u>	<u><신설></u>							과	7. 민원 콜센터 <u>운영</u>	1. 민원콜센터 기본계획 수립	<u>기안</u>			0		
		<u><신설></u>									2. 민원콜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인	<u>}</u>		0			
		<u><신설></u>									3. 민원콜센터 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기인	<u>}</u>	<u>O</u>				
		<u><신설></u>									4. 민원콜센터 상담자료(DB) 및 상담 프로그램 관리	<u>}</u>	<u>O</u>				
		<u><신설></u>									5. 민원콜센터 운영 결과 분석 및 반영 기인	<u>}</u>		0			
		<u><신설></u>									6 민원콜센터 청사 관리 기인	<u>}</u>	<u>O</u>				
		<u><신설></u>									7. 민원콜센터 위·수탁 계약	<u>기안</u>			0		
		<u><신설></u>									8. 민원콜센터 위·수탁 운영관리 기인	<u> </u>		<u></u>			

13
حــا

		현 현	}								개	정 안				
소관	단위		フ	기안자	및 전	년 결 권	자	시장	소관	단위	2.11		7	1안자 및 전	선결권:	자 시장
부서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담당	과장	장 _{국장} 부 결 ^교 시장		결재	부서	업무	세 무 / 	세 부 사 무 명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시장
행정 지원	1. ~ 35. (생략)								행정 지원	1. ~ 35. (현행과 같음)						
과	36. 국P比	1.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수립 집행		기안			0		과	<삭제>	<삭제>					
		2. 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 발령	<u>기안</u>				0				<삭제>					
		3.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 보고	<u>기안</u>			0					<삭제>					
		4. 기반체계보호 관련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 안정대책본부 구성운영					0				<u><</u> 삭제>					
		5.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 명령	<u>기안</u>				0				<삭제>					
		6. 특별 재난지역 등에 대한 <u>지원</u>	<u>기안</u>	-			0				<삭제>					
		7. 위험지구 설정	<u>기안</u>	-		0					<u><삭제></u>					
재난 안전	1. ~ 14. (생략)								재난 안전	1. ~ 14. (현행과 같음)						
과	<신설>	<신설>							과	<u>15.</u> 국가기반 <u>체계보호</u>	1. 기반체계보호 관 집행	련 안전관리 계획수립		<u>기안</u>		0
		<u><신설></u>										<u> </u>	기안			0
		<신설>									3.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 보고	<u>기안</u>		0	

13
-

-65 -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소관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 자	과장	_{국장} 부 시장	결재	부서	업무	" 1 1 0	, ,	담당 자	담당	과장	국장	무 : 시장	결재
		<u><신설></u>							4. 기반체계보호 관련 회 및 지역안정대	지역안전관리위원 책본부 구성운영	<u>기안</u>				0	
		<u><신설></u>							5. 인력·장비·물자 등	·의 동원 명령	<u>기안</u>				0	
		<u><신설></u>							6. 특별 재난지역 등	에 대한 지원	<u>기안</u>				0	
		<u><신설></u>							7. 위험지구 설정		<u>기안</u>			0		

익산시공고 제2010-225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변화된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는 등 혼선을 없애고자 함.
- 나.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등을 복사·인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 다. 다원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도서관 이용에 따른 서비스 증진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바,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 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더불어 도서관의 신속한 서비스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봉사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봉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마. 개인정보보호 및 IT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서식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되어 [문화의 집] 이 부존재 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 및 삭제(조례안 제1조, 제2조 제7호~11호)
- 나. 수수료 용어 정의 및 수수료 징수 조항 신설(조례안 제2조 제12호, 제7조 제4항)
- 다. 개정 조항 중 자료 및 정보의 복사·인쇄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근거 마련(조례안 제2조 제12호, 제7조 제4항)
- 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조례안 제2조제4호, 제7조제3항, 제 25조)
- 마. [자원봉사자 배치] 조항 신설(조례안 제25조의2)
- 바. 개정 조항 중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에 관한 지급 근거 마련 (조례안 제 25조의2제2항)
- 사.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되어 [문화의 집]에 설치된 시설물 부존재로 시설명 수정 및 수수료 신설(별표)
- 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서식설계기준의 적용, 현실에 맞는 규격 정비 등 별지 행정서식 수정·보완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3의2호서식, 제5호서식, 제6서식,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 (참조 : 시립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160 익산시 영등동 814번지 익산시립도서관 (전화 063-859-4661, FAX 063-831-1462)
-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도서관 담당자(063-859-4667)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익산시 문화의 집"을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으로 한다.

- 제2조제4호 중 "것을" "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이라 함은 1층 유아실, 2층 어린이실로 구성된 어린이전용 도서공간을 말한다.
 - 8. "유아실"이라 함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 공간으로 동화세상, 이야기방, 아가방 등의 공간을 말한다.
 - 9. "어린이실"이라 함은 초등 고학년 대상 공간으로 잉글리쉬존, 멀티미디어실, 도란도란방 등의 공간을 말한다.
 - 1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정보 및 자료 등을 복사·인쇄하는 자로부터 장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5항 중 "허가취소원을"을 "허가 취소를"로 하고, "도서관시설 사용허가취소원을"을 "도서관시설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로 한다.
- 제7조 제목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료 등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강신청서에"를 "수강신청서 제출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도서관 내에 비치된 정보 및 자료의 복사·인쇄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25조 중 ""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원봉사자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도서관시설사용료및수강료"를 "도서관 시설 사용료·수강료·수수료"로 하고, 제1호 기본사용료 시설명란 "문화관람실(시청각실)"을 "시청각실"로 하며, 연구실란 및 기준 "1일",금액 "500"을 각각 삭제하고, "프로젝터"를 "빔프로젝터"로 하며, 실물화상기란 및 기준 "1일", 금액 "5,000"을 각각 삭제하고, "앰프"를 "음향설비"로 하며, 제2호 냉·난방시설사용료 시설명란 "문화관람실(시청각실)"을 "시청각실"로 하고, 제4호 "수수료"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도서관 시설 사용료 수강료 수수료 (제7조 관련)

1. 기본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원)	비고
	강 의 실	1회	15,000	1회 기준
	시청각실	1회	30,000	4시간 이내
부 속	빔프로젝터	1회	8,000	1회 기준
시 설	음향설비	1회	5,0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2. 냉·난방시설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원)	비 고
강 의 실	1회	10,0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시청각실	1회	20,000	4시간 이내

3.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고
장기강좌	1월	10,000	1월기준 4주

4. 수수료

구 분	규 격	기 준	금액(원)			
자료복사료	A4	1매	40			
사고 <u></u> 기교 기교	B4	1매	50			
프린터사용료	A4	1 매	50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보상금 기준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도서	ᅿ	처리기간				
	エハ	즉시					
신	성 F (단 체 명	-				주민등록번호	
청 인	주 2	<u> </u>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	기 본 시	설					
시설	부 속 시	설					
사	용기	가	년	월	일	시부터	
	0 /1	L: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	용 목	적					
행 시	가 주 요 내	용					
참 기	가 예 상 인	원					
	익산시립도서 하여 주시기			조례」	제4조 <mark>에</mark>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년	월	일	
				신*	청인	(서대	명 또는 인)
익산	:시립도서관	장	귀하				
نة. ا	н л =	ي	ગો તો જો ગો	1 H			수수료
점	부 서 류	δ,	생사계획서	1누.			없 은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도서관 <mark>시설</mark>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	일			
신	추 소		전화번 (휴대				
변경	변 경 전						
사항	변 경 후						
Ħ	년 경 사 유						
허가		난 운영 관리조례」 저 변경사유가 위와 같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기	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	·시립도서관	장 귀하					
첨	부 서 류	<u>0</u> - н/	· □		수수료		





[별지 제3호서식]

			도서	관 .	시	설 사	용	허 7	ነ ት	બે		
신 청	성 명 (단체명)							생년	월 역	길		
· 인	주 소							전회 (휴 i	-번그 대폰	<u>ਏ</u> -)		
사	용 장 소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년		실	일 일		시부터 시까지			일	시간)
사용	료납부방법	선	[납	년		월	ę	<u>]</u>	시	까지		
사	용 료	계				본시설 용 료					녹시설 용 료	
허	가 조 건	0	면참조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시립도서관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이면)]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3. 사용기간 중 <mark>익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의</mark> 설비·시설·비품을 파손·분실한 때 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도서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도서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설치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6. 사용료는 과오납·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불사용시는 반환하지 <mark>않습니다</mark>.
- 7.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에서 집회허가 및 행사허가를 득하여야합니다.
- 8. 사용료는 납부기일까지 <mark>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전에</mark>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 상기 허가조건 위반시에는 즉시 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
- 11. 본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도서관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1 m1 m1 m1		
	도서.	. 워	처리기간 			
	<u> </u>	- 12	즉시			
신 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선 인	주 소	2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 허가	사용기	간				
내역	사용목	적				
Ž	l 소 사 유					
허가		난 운영 관리조례」 제4조제5 [₹] 취소사유가 위와 같이 발생하 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또는 인)		
익산	시립도서관	장 귀하				
7)	비 지 근	Ol 0		수수료		
台	부 서 류	歌 音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독 <i>/</i>	처리기간	
Γ ,	즉시	
회 원 번 호	구 분	담 당 자 (인)
성 명	자택 <mark>전화</mark>	
주민등록번호	휴 대 폰	
자 택 주 소		
직 장 명 학교명(학년,반)	E- mail	

위 본인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제12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 독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대출 받은 자료는 반드시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는 배상 · 변상하겠기에 신청합니다.

※ 도서연체 안내를 자택전화 및 휴대폰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립도서관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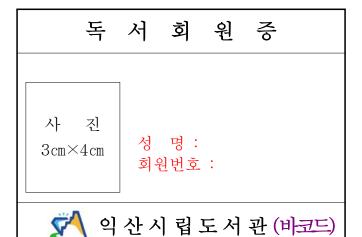




[별지 제6호서식]

독 서 회 원 증 (제12조제6항 관련)

(앞 면)



87mm×55mm PVC 비닐

(뒷 면)

☆ 유의사항 ☆

1.도서의 대출시는 이 증을 제시하십시오.

2이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함(가족회원증은 제외) 3.대출기간은 1인 3책 14일(기족회원은 1기족 10책 14일)

4.지료실 휴무일 : 영등도서관/2.4주-월요일/(1,3.5주-일요일)

미동도서관(1,3주 월요일)(24,5주 일요일)

5.도서관 휴관일 :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 영등도서관: 🗗 (063)859-4661~2

* 마동도서관 : 🕿 (063)859-4663~4

* 홈페이지: http://lib.iksan.go.kr

익 산 시 립 도 서 관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제4조제6항 관련)

NO:							접수자	:		
			수 경	상 신	청	서				
과	목			기	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병	번호	자 택) 휴대폰)		수 경	를 료	금	원정(⟨₩)
		산시립도서관에서 반규정을 준수하] 참석을	- 희망히	-며, 교육7	기간중		
			년	월	Ó.	<u>]</u>				
				신청	인		(서명 또	는 인)		
익산시]립도서	관장 귀하		직 인						
NO:			접		증					
ন্য			P	•	_	1.1	റി റി	1-1 (21	<u>ما</u>
과	목			フ <u> </u>	간	년 	월 일 ~	년 🤄	<u> </u>	일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수강료	납부액	금	원정(₩)				
귀하께서 제출하신 수강신청서를 수강료와 함께 접수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Ļ	<u>d</u>	월	일				
	의 산 시 립 도 서 관 장 직 인									

아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제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 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익산시립 영등도서관과 익산시 문화의 집(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

제2조(정의) (생략)

혂

- 1. ~ 3. (생략)
- 4. "시설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4. ----부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5. ~ 6. (생략)
- 서비스실, 문화체험실, 문화창작실, 문화생활실 등을 설치 주민이 이용 구성된 어린이전용 도서공간을 말 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을 말한다.
- 자료, 어린이놀이방, 휴게라운지로 저학년 대상 공간으로 동화세상,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1조(목적)
<u>도담도담 어린이</u>
도서관
계9ス(저이) (첨해고 가으)

정

개

제2소(성의) (연앵과 낱음)

- 1. ~ 3. (현행과 같음)
- ---- 비용을 ----.
- 5. ~ 6. (현행과 같음)
- 7. "문화의 집"이라 함은 관리 7.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이라 함은 1층 유아실, 2층 어린이실로 한다.
- 8. "관리·서비스실"이라 함은 정보 8. "유아실"이라 함은 유아 및 초등 이야기방, 아가방 등의 공간을 말한다.

현 형	J		개	,	정	안	
9. " <u>문화체험실"이라 함</u>	은 CD 멀티	9. '	' <u>어린</u> ㅇ]실"이	라 함은	은 초등	고학년
미디어 비디오 인터넷을 이	용하여 음악	대성	는 공긴	<u>-</u> 으로	잉글	리쉬존,	, 멀티
영화감상과 정보검색은 불	물론 소규모	미디	어실,	도란!	도란방	등의	공간을
전시·공연·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u>말</u> 한	<u>단.</u>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문화창작실"이라	함은 문화	<u><</u> 삭제	1)>				
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역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등을 할 수 있	있는 공간을						
말한다.							
11. "문화생활실"이라	함은 문화	<u><</u> 삭제	1)>				
예술 동호인 등의 모임 공기	간을 말한다.						
<u><신설></u>		12.	" <u>수수</u>	료" 리	ት 함은	- 도서된	<u>반 내에</u>
						도 등을	
				자로부	<u>터 장</u>	수하는_	비용을
	15 11 1151	<u>말</u> 한		.)_) -	1 21	1 1 - 1	n = \
제4조(사용허가 및 수강제	줄서 제줄)						제줄)
① ~ ④ (생략)	A) A 3) 5)		~ ④				
⑤ 시설사용 허가취소		(5)		<u>허</u>	가 취 :	<u> 오를</u>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							
"별지 제3호의2서식"] =] >] >	an o	 -) -) -]	
도서관시설사용허가취소	<u>.천글</u> 제술	<u>노</u> 스	<u>1반시설</u>	<u> 일사풍</u>	<u> 어 가</u> 주	소신청	<u> 서늘</u> -
하여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u>u</u> 0	711 0 12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서	③
교부시 제2항에 의한 수강료는 <u>수강</u>	<u>수</u> 강
<u>신청서에</u>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u>신청서 제출시</u>
<u><신설></u>	④ 도서관 내에 비치된 정보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5조(실비변상) 운영위원의 실비	제25조(실비변상)
변상에 관하여는 <u>"익산시각종위원</u>	「의산시
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u><신설></u>	제25조의2(자원봉사자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
	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 💆 시보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도서관시설사용료및수강료 (제7조제1항 및2항 관련)

1. 기본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액(원)	비 고
강	의	실	1회	15,000	1회 기준
문: (시	화관림 청각		1회	30,000	4시간 이내
<u>연</u>	구	실	<u>1일</u>	<u>500</u>	
부 :	프로즈	벡터_	1회	8,000	· 1회 기준
속술	l 물화	·상기	1회	5,000	
설인	A	<u> </u>	1회	5,000	4시간 이내

[별표]

도서관 시설 시용료수강료수수료 (제7조관련)

1. 기본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액(원)	비	고
	강	의	실	1회	15,000	1회	기준
	시	청각	<u>-실</u>	1회	30,000	4시긴	<u>·</u> 이내
	<	삭제	>	<삭제>	<삭제>		
브	빞	프로	_젝터	1회	<u>8,000</u>		
속 시 설	-	(삭)	제>	<삭제>	<삭제>	1회	기준
설	<u></u>	수향/	설비	1회	5,000	4시긴	나이내

2. 냉·난방시설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원)	비고
강 의 실	1회	10,000	1히 기주
문화관람실 (시청각실)	1회	20,0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2. 냉·난방시설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원)	비고
강 의 실	1회	10,000	1히 기주
<u>시청각실</u>	1회	20,0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3.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장기강좌	1월	10,000	1월기준 4주

3.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장기강좌 1월		10,000	1월기준	6 4주	

<신설>

<u>4. 수수료</u>

구	분	규	격	기	준	금액	(원)
자료복사료		A4		1 매		40	
사료=	八五	В	4	י1	매	5	0
프린터	사용료	А	4	1 매		5	0
데이터	베이스	문화치	세육관	광부	도서	관 5	보상금
이용수	수료	기준이	게 따를	름			



익산시 💯 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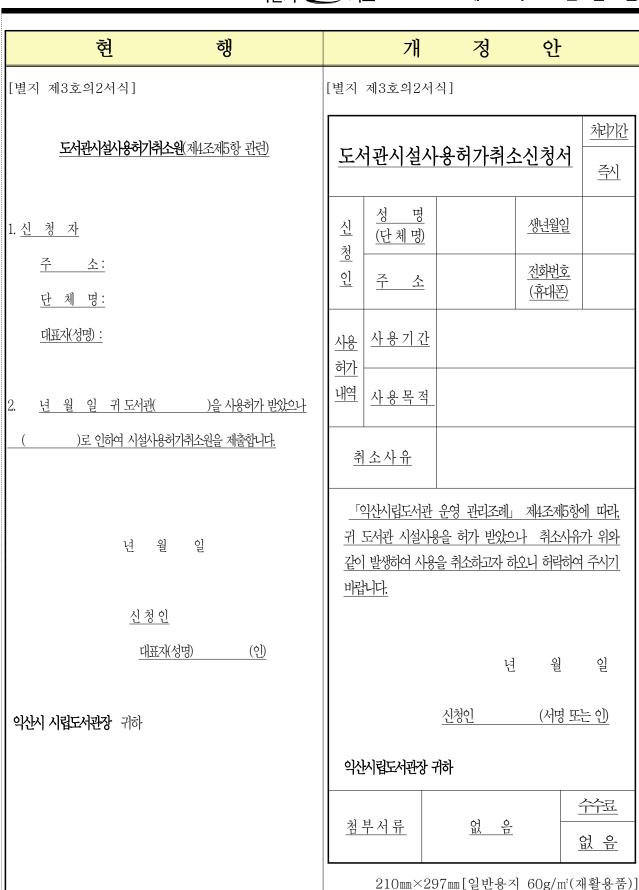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ス	제1호/	서식]			
도서관시설	설사용허가신] 청서 (제4조	제2항 관련)		 도서관	 ·시설사-	 용허가 [,]	 신청서	처리기간
주 소 사 용 만체명 자 성명 또는		연락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성 (단체명 주 소)		<u> 전화번호</u>	즉시
<u>대표자</u> 사 용 기본시설 시 설				스 사용 시설	기본시설	1		(<u></u> (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ří L	()일	사 -	용 기 건	년		일 시부터	(일간)
행사주요내용				사 -	용 목 조	}			
시 설 사 용 료				행사	주요내용	 			
비 고	첨부 : 행사계	<u>획서</u>		참가	예상인원]			
	일도서관운영관리조 시설사용 허가를 ¹ 년 율	받고자 신청합니		<u>위</u>] <u> 제4조제1형</u> 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신청인 <u>성</u>	명	(인)					년 월	일
익산시 시	립도서관장 귀히	카 		익	산시립도	신 -서관장 ㅋ	청인 시하	(서명 <u>대</u>	<u>단 인</u>
					부 류	<u>행사</u> 7	계획서	1부.	<u>수도</u> 없음
					<u>210</u> m	m×297mm	[일반용기	지 60g/m²(자	활용품)]

-a -n		Y	1	- 1		1	
<u>현</u> 행		가		정	ę	<u> </u>	
[별지 제2호서식]	[별ス	제2호서	식]				
도서 관()사용변경신청서(제4조제2항관련)						_	처리기간
	<u>도</u>	서관시	설사	·용변	<u> 경신청</u>	<u>서</u>	즉시
1. <u>신청자 주 소 :</u>		<u>성</u> 명			21h - 20	าได้ไ	
단체명 :	<u>신</u> <u>청</u>	<u>(단체명)</u>			<u>생년</u>	<u> 현일</u>	
 성 명:	<u>인</u>	<u>주 소</u>			<u>전화</u>		
					<u>(</u> केंप	<u>忙</u>	
2. 년 월 일귀도서관()을사용하기를 받았 나 ()로	변경 변경	<u>변경전</u>					
	사항	W 7 7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청하하여 주시기 바		<u>변경후</u>					
합다.	申	<u>l</u> 경사유					
		2 0 1 11					
3. <u>변경내역</u>		「익산시립도시					
<u>가. 변경전</u>		도서관 시설 이 발생하여 /					
<u>나. 변경후</u>		<u>라니다.</u> 랍니다.	10 근	다 0이고?	, 0 <u>,1,</u> 0,	<u>/ 0 -</u>	1 1. 1.
년 월 일					년 -	월	일
는 전 별 년 -					Ľ	근	린
				신청인	(서명	<u> 또는 인</u>
신청인 <u>성명 (인)</u>	[] 	산시립도서관장	귀하				
		- 14- 14:0	•1 1				<u>수수</u> 료
익산시 시립도서관장 귀하	철	부서류		없	<u>о</u> п	-	<u> </u>
		010	.907	~.[V] പ 	2 7 00 /	2/-	
		<u>210mm×</u>	297 m	皿[일반충	당시 bUg/	m [*] (Z	내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시설사용	허 가 서 (제4조3항 관련	도서관시설사용허가서
사 <u>주 소</u> 용		연락전화번호	77 124
<u>용</u> <u>자 성 명</u>		<u>주민등록번호</u>	신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장소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년 년	일 시부터 <u>(일시간)</u> 일 시까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i>부</i> 터 년 월 일 시 <i>까</i> 지 <u>(일 시간</u>
시용료납부방법	선납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료납부방법 선납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료	계	보시설 부속시설 용료 사용료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 용 료 사 용 료 사 용 료
허가조건	이면참조		허가조건 이면참조
<u></u> 일산시립 <u>합니다.</u>	도서관운영관리조례 저	4조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익 산 시 시	립도서관장 직인	익산시시립도서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익산시 **시**보 제344호 / 2010년 2월 12일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이면)]	[별지 제3호서식(이면)]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1. 본 도서관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1. 사용자는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2.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합니다.				
3. 사용기간중 도서관의 설바비품을 파손분실할 때에는 원상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본도서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3. 사용기간 중 익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설비·시설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등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사고에 대하여 본 도서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완료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본 도서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도서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관장의 허가를 득한후 시설물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함.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은				
6. 사용료는 과오납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외에는 반환하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않으며,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불사용시는 반환하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7. 관계기간에서 집회허가 및 행사허가를 득하여야 함. 단, 법령의	도서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 영수증을 본 도서	6. 사용료는 과오남·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외에는 반환하지				
관장에게 당일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함.	않으며, 사용지측의 사정으로 불사용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계약금으로 원을	7.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에서 집회허가				
영수하고 상기조건 위반시는 반환하지 않음.	및 행사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0. 상기 허가조건 위반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함.	8. 사용료는 납부기일까지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전에				
11. 본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도서관의 해석에 따름.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상기 허가조건 위반시에는 즉시 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				
	11. 본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도서관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익산시 **시**보 제344호 / 2010년 2월 12일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독서 회가	입 신 청 서 (제12조제4항 관련)	독서회가입신청서 취리기간 즉시
회원번호	담당자 시서계장 관 장 결	<u>구</u> 분 <u>담당자 (인</u>
성 명	<u> </u>	<u>사</u> 성 명 <u>자택전화</u>
주민등록번호	세 대 주	
<u>자택번호</u>	전 화	
<u>직 장 명</u> (학교,학년반)	전 화	<u> 자택주소</u>
	서관 독서회에 가입함에 있어 대출받은 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는	<u>직 장 명</u> 학교명(학년 반) <u>E- mail</u>
책임지고 즉시 변상할 것		위 본인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제12조제 6항 및 제16조에
년	월 일	따라 독서화원에 기입함에 있어 대출 받은 자료는 반드시 반납기일을 엄수 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는 배상 · 변상하겠기에 신청합니다
	<u>위신청인 (인)</u>	※ 도서연체 안내를 자택전화 및 휴대폰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익산시 시립도서관장 귀히	<u>.</u> ()증 대조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Heave E	<u> </u>
		익산시립도서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익산시 🛂 시보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제4항 관련)	독서 회	원 증(<u>제</u>]	12조제6항 관련)
앞 면 독 서 회 원 증	뒷 면 주 소			(앞 면)
7 7 7 2 0	주민등록 번 호	독	서 회 원	<u>.</u> 중
	신 청 일			
<u>반명함사진</u>	도서관안내	사 진		
	○ 개관시간 - 자유열람실 07:00(11월~2월 08:00) - 22:00	3cm×4cm	<u>성 명 :</u> 회원번호	:
	- 지유열람실 09:00-17:30 (11월 ~ 2월 16:30)			
<u>성</u> 명	○ 휴 관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 국경일 및 공휴일(일요일 제외)	<u> 역</u> 역산	시립도서	관 (비코드)
<u>바코드</u>	○ 문 의 처 - 약산시마동 57-4 (☎857-7488-9)		$87\text{mm} \times 5$	55mm PVC 비닐
익산시 시립도서관장 직인		☆	유의사형	(뒷 면) : ☆
		1.도서의 대출시는 0 2.이 회원증은 본인민	증을 제시하신	<u> </u>
		3.대출기간은 1인 3착	14일(기 족 회원	은 1기족 10책 14일)
			<u> 동도서관(1,3주-월</u>	<u> </u>
		5.도서관 휴관일 : 신 * 영등도서관 : ☎		
		* 마동도서관 : ☎ * 홈페이지: htt		
		의 산 시 립	<u>도 서 관 장</u>	직인



익산시 🏹 시보

현		행		개	정	وَ	<u>}</u>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 강 신 청	서(<u>제4</u> 2	존제5항 관련)	NO:			7	업수자:
NO				수	강 신 기	청서	
	신 청	서	과 목		기 간	년 월	일~년 월 일
과 목 기	간	년 월 일~ 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	
성 명 주	민등록번호		주 소	do- d			
주 소			전화번호	<u>자 택)</u> 휴대폰)	수강료	금	원정(₩)
	강 료		본인은	- 익산시립도서관	<u></u> 에서 운영하	는 강좌에	참석을 희망하며,
본인은 익산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간중 도서관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		선을 희망하며, 교육	ग्रिक्ट	l긴중 도서관 저	l반 규정을 준	주하겠습	니 다.
						년	월 일
년 ·	월 일				신청	성인	(서명 또는 인)
<u> </u>	신청인	(인)	 약산시 ⁱ	립도서관장 귀하			
 익산시 시립도서관장 귀하					직 인		
NO	. z		NO:	7	접 수	즛	
	수 중 : 년월	일~년 월 일	 과 목		<mark>기 간</mark>		일~년 월 일
<u> </u>	= ,,), =,		<u>성</u> 명		<u> </u>	_ 긴 뒫	큰 건 본 판
<u>○ 성 명</u> : <u>○ 주민등</u> ○ 수강료 납부액 : 금 원정(- 	-	0122		
			<u></u> 수강료	-	A)-1/***		
가하께서 제출하신 수강신청서를 접수증을 드립니다.	수강료와 힘	께 접수하였기에	납부액	금	원정(₩		<u>)</u>
년	월 일		 기치계사	기 계추하시 스기	Ы처서로 스	가근이 하	께 접수하였기에
 익산시 시립도서관장			이증	를 드립니다.	8건 8기로 1	78파커 함 년	월 일
				의산시	립도서	관장	직 인

익산시공고 제2010-229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변화된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는 등 혼선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관 시설 중 [문화의 집]이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되어 부존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 (참조 : 시립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160 익산시 영등동 814번지 익산시립도서관 (전화 063-859-4661, FAX 063-831-1462)
-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도서관 담당자(063-859-4661)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붙임: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의 집"을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으로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시휴관일 및 열람실 운영시간)	제3조(임시휴관일 및 열람실 운영시간)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료열람실과 <u>문화의 집</u> 운영	③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 -
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이며 토·일요일은 09:00부터 17:00	
까지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익산시공고 제2010-233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다면평가 운영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다면평가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89호(2009.12.31))가 제정. 시행되어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시 다면평가 운영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다면평가의 실시 및 결과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규칙 제2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행정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우편 570-753 익산시 남중동 시청로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063-859-5728, FAX 063-859-5059)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 (전화 063-859-5728)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다면평가실시 및 결과반영)를 삭제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아

정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제28조(다면평가실시및결과반영)영제(삭제) 38조의5에 따라 승진임용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면평가는 승진요인 발생시

했

혅

-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한다.
- 2. 다면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자 당해 직렬의 상위계급, 동일 계급,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구성 하되, 업무의 유관성이 밀접한 다른 직렬을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3. 위원수 및 구성방법, 평가항목
-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승진임용시 평가대상자는 영 제32조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영 제30조제1항과 제38조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로 한다.
- 5. 제1호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90퍼센트와 평가점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별도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재작성 하여 반영한다.
- 6. 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

익산시공고 제236호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시용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2009.08.15.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증·개축 공사 준공에 따른 음향 및 조명시설 확보로 소규모 공연·전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야외공연장 사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 및 시설사용 허가범위 다. 시설 사용 허가 범위 및 사용료

- 1) 야외음악당 조명 및 냉·난방기 사용료
- 2) 야외음악당 앰프사용료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체육진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979 익산시 시청로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체육진흥과 (전화 063-859-4613, FAX 063-859-5077)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체육진흥과 공원시설담당자 에게 (전화: 063-859-4613)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야외음악당"이란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이하 "야외음악당"이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2. "야외음악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 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야외음악당의 시설) 야외음악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야외공연장
 - 2. 부속시설 : 조명설비, 음향설비, 연습실,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 제4조(사용신청) ① 야외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허가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시장은 제4조의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가 불가능 할 때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음악당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운영 및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8조(사용시간) 야외음악당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 1. 오 전: 08:00 부터 12:00 까지
 - 2. 오 후 : 13:00 부터 17:00 까지
 - 3. 야 간 : 18:00 부터 22:00 까지

-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야외음악당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2. 반액감면: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
 -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 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워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외음악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야외음악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야외음악당 사용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④ 야외음악당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14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야외 음악당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최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

구 분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조명 및 냉·난방사용료	오전 오후 야간	10,000 10,000 1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 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앰 프 사 용 료	오전 오후 야간	20,000 20,000 2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 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시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계속 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신청서							
신	주 소						
청	단 체 명			전화변	크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	<u> </u> 일		
사용	기본시설					I	
시설	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	년 년	열	일	시 -	()일
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						
사 용	용 면 적 (층 별)						
시	설 사 용 료						
刊	고	첨부 : 행사	계획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음악당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신	주 소								
청	단 체 명				そ	화번호			
인	성명(대표자)				싣]년월일			
	공연·행사 명칭								
	공연·행사 내용								
사 용 기 간		년 년		월	O E		부터 (까지)일
	구 분	世 世	경	전		- <u>'</u> 변	경	후	
변	사 용 목 적								
경	행 사 주 요 내 용								
내	시설사용내역								
역	시 설 사 용 료								
	기타								
	취소사유				,				
	(변경사유)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음악당 사용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Ò	박산/	시 배	산체	육공원	야외유	음악당 /	사용허가서	
신	주		소						
청	단	: 체	명			전]화번호		
인	성명](대포	도자)			생	년월일		
사 용	용 허 기	가 시] 설						
사	용	목	적						
사	8	기	간		년	월 이	일	시 부터 ()일
사 용	3 료 1	급부'	방법		년	월	일	시 까지	
사	<u>9</u>	-	료	계		기본 _/ 사 용	, _	부속시설 사 용 료	
허	가	조	건				이 면 참	· 조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음악당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허 가 조 건

- 1. 본 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 3. 사용기간중 음악당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할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음악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관리소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5. 상기 허가조건 위반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함.
- 6. 본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관리소의 해석에 따름.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ই	년도 일반회계	익산시 체육진흥과				
(관)경상적수입			(항)사용료수입				
<u> 5</u>	를)기i	타사용료					

일금		

난_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 산 시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성명 (인) 귀하

영수필통지서

			0 1	
제	ই	년도 일반회계	익산 체육진	
(관	-)경4	상적수입	(항)사용	료수입
(목	-)기E 수	타사용 료 입		
6	コユ			
Ī	- 11			

1	란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현

년	월	일
시금고:		(인)
징 수 관		
(징수과장)	귀하

납입자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수입금 출납원	(인)	기장	(인)

제	ই	년도 일반회계	익산시 체육진흥과
(स्	<u>박</u>)경	상적수입	(항)사용료수입
(Ē	락)기I 수	타사용료 입	

일금		

ι	건			
위	금액을	영수하	였기에	통지
		1.3	01	٥١

시금고:	(인)
세입징수관	

납입자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수입금 출납원	(인)	기장	(인)

제	ই	년도 일반회계	익산시 체육진흥과
<u>(</u> į	관)경	상적수입	(항)사용료수입
(j	록)기 수	타사용료 입	

일금		

닦			

[별지 제5호서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주	소									
청	단	체 명			전호	화번호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	용 시 /	설 명									
사	용 목	구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쿠터 ()일			
7.1	0 /	<u>u</u>	년	월	일	시 7	가지	/ 근			
감	면의	종 류	전 부	- (),	일 부 ()				
감	면 시	F #									
7]		타									

첨부 : 1. 신청사유서 1부

2. 기타관련서류 1부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익산시공고 제2010-242호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제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기준과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운영지원 등 일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그리고 발의 중인 독서 문화진흥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자, 시설, 도서관자료에 대한 설립기준 등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을 시립도서관 소관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서담당으로 함 (안 제8조)
- 운영지원 등에 있어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0-160 익산시 영등동 814번지 익산시립도서관 (전화 063-859-4667, FAX 063-831-1462)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도서관 담당자 (063-859-4667) 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목 "(작은도서관 선정기준)"을 "(작은도서관 선정 및 설립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신설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 ③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 2.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1인 이내"를 "11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립도서관 소관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서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 부 친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선정관련 세부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u>〈신 설〉</u>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설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과 관련한 관내 기관장,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정 주요시책에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 4. (생 략)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u>1명</u> <u>11명 이하</u> . ② <u>위원장과</u> ③ 시립도서관 소관국장과 도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u>지원하여야 한다.</u>	<u>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별표 1]

작은도서관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장 소	·주민자치센터 내 ·공공시설 ·읍·면·동 마을회관 ·300세대 이상 아파트	·공공장소 우선 ·종교단체, 대형할인 매장, 토지·시설물 등을 개인이 소유한 장소는 배제 ·지역안배 고려(거리, 여건, 인근 도서관 과의 연계)
시설면적	·건평 83㎡ 이상 ·열람석 20석 이상 설치 가능 한 곳	
수혜대상 인구	-읍 • 면지역 : 100세대 이상 • 학생수 40명 이상 ·동지역 : 200세대 이상 • 학생수 : 100명 이상	·모든 시민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대수
자부담 능력	·공공요금 등 자체 해결	·시가 직접 설치시는제외 ·자부담 능력이 높은 지역 우선
운영인력 확보	·읍·면지역 6인 이상 ·동지역 10인 이상	·자원봉사자의 의지, 능력, 활동 등 고려
운영주체	·실질적인 운영책임자 확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시가 직접 설치시는 제외

<u><삭 제></u>



익산시공고 제2010-250호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12.

익 산 시 장

1.제정이유

이 조례는 익산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익산시 축제의 종류 (안 제4조)
 - ▶ 익산서동축제, 익산국화축제, 익산보석축제, 익산돌문화축제
 - ▶ 시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축제 개최·지원 가능
- 축제심의위원회의 역할 (안 제5조)
 -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 운영, 축제 개최시기 변경, 축제평가에 대한 사항 등 심의
- 축제심의 위원회 구성 (안 제6조)
 - ▶정 원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 당연직 : 시장(위원장), 축제를 담당하는 국·소장
- 축제사무 (안 제14조)
 -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 ▶ 익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익산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0-753 익산시 시청로1 (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문화관광과(전화 063-859-5875 FAX 063-859-5067)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모두가능

붙임: 제정안 1부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익산시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시민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또는 산업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제3조 (축제의 육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축제의 종류) 이 조례에서의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익산서동축제 : 서동(백제 무왕)설화를 기반으로한 문화축제
 - 2.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시화인 국화를 통해 도 농이 함께하는 농업관광축제
 - 3. 익산주얼리엑스포 : 귀금속보석 특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산업엑스포
 - 4. 익산돌문화축제 : 석공예 전통문화계승과 석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에서 주최 또는 지원하는 축제
-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의) 시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 2. 축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 3. 축제평가에 대한 사항
 -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윈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및 산업 등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경비 지원) 시장은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개최자에 대하여 그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축제사무)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 (평가) ①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제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서동축제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익산서동축제추진위원의 위촉직위원의 잔여 임기동안을 이 조례에 의한 축제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익산시공고 제2010-164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정 공고

익산시 공고 제2009-359호(2009. 3. 30) 및 공고 제2009-661호(2009. 5. 15)로 공고한 사닥골천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사업개요									
소하 천명		사업	사업량(km)			사업	기간			
	사업명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사업목적	비고
사닥 골천	사닥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여산면 태성리 955	여산면 태성리 769-1	1.98	1.98	-	2009. 4.	2012. 12	일괄된 개수계획으로 재해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첨부

■ 열람서류 : 정비계획도 및 위치도 등

■ 열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 열람장소 : 익산시청 재난안전과 (**☎**859-595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사닥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 ,		소재지	3 1 1 0 A L	지	공부상 면적	편입	토지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번호	시	면	리	지번	목	(M2)	지번	편입 면적 (M2)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계		70필지		96,758		14,250								
1	익산	여산	태성	860-1	답	2,952	860-30	179	1/27	송오병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전주태평 에시케이뷰@107/1004					
									1/27	송수병	양천구 목동 917 목동파라곤 104/902					
									25/27	익산시						
2	"	"	"	860-2	답	1,289	860-31	55	1/27	송오병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전주태평 에시케이뷰@107/1004					
									1/27	송수병	양천구 목동 917 목동파라곤 104/902					
									25/27	익산시						
3	"	"	"	860-3	답	681	860-32	10		익산시						
4	"	"	"	860-4	답	1,306	860-33	1		익산시						
5	"	"	"	862-7	답	1,398	862-13	188		익산시						
6	"	"	"	862-8	답	1,045	862-14	439		익산시						
7	"	"	"	862-9	답	883	862-15	376		송영득	양주시 삼숭동 자이아파트 506-301					
8	"	"	"	862-10	답	1,478	862-16	234		송영득	양주시 삼숭동 자이아파트 506-301					
9	II	ı	"	862-12	답	1,031	862-17	5		익산시						
10	II .	"	II.	863-3	답	1,907	863-8	217		익산시						
11	"	"	"	863-4	답	1,550	863-9	521		익산시						
12	"	"	"	863-6	답	883	863-10	123		익산시						
13	"	"	"	863-7	답	900	863-11	320		익산시						
14	"	"	"	866-1	답	410	866-18	154		송사희	송파구가락동 21-6 가락2차 쌍용@105-101					
15	"	"	"	866-2	답	675	866-19	135		송사희	송파구가락동 21-6 가락2차 쌍용@105-101					
16	"	"	"	866-3	답	649	866-20	110		송사희	송파구가락동 21-6 가락2차 쌍용@105-101					



의산시 🐼 서보



17	"	"	"	866-4	답	946	866-21	138		익산시					
18	"	"	"	866-5	답	2,042	866-22	258		송주원	대덕구 덕암동 65-6 세영빌라 A동 402호				
19	"	"	"	866-6	답	1,231	866-23	348		익산시					
20	"	"	"	866-7	답	2,383	866-24	129		익산시					
21	"	"	"	866-8	답	1,015	866-25	260		익산시					
22	"	"	"	867-1	답	1,587	867-7	588		익산시					
23	"	"	"	867-4	답	1,471	867-8	533		이정호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094				
24	"	"	"	산190	임	480	산190-3	9		송연	강남구 압구정동 414 미성@1-106				
25	익산	여산	태성	865-1	답	3,154	865-7	701		임은수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452-5				
26	"	"	"	865-2	답	1,650	865-8	653		이유진	구리시 교문동 808 덕현@109-1803				
27	"	"	"	865-3	답	1,683	865-9	306		송일병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5-47 한신오페라하우스@101-902				
28	"	"	"	865-5	답	1,428	865-10	215		오관종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199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29	"	"	"	869-1	답	1,207	869-5	401		임은수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452-5				
30	"	"	"	870-7	답	1,590	870-21	198	1/5	강제술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390				
									1/5	강제권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358				
									1/5	강용식	논산시 연무읍 고내1동 289				
									1/5	강제주	논산시 연무읍 고내1동 290				
									1/5	강막기	논산시 연무읍 고내1동 302				
31	"	"	"	795-1	답	1,309	795-7	473		오관종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199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32	"	"	"	797-1	답	684	797-7	182		이강해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340				
33	"	"	"	797-2	답	483	797-8	212	1/2	김정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903-17 기산@101-1105				
									1/2	이상선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1				
34	"	"	"	799-4	답	1,152	799-8	94		김회수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515				
35	"	"	"	804-8	답	1,732	804-9	377		이진호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098				
36	"	"	"	805-13	답	2,000	805-16	434		송예봉	익산시 어양동 652-1 부영@106-201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37	"	"	"	806-14	답	1,273	806-21	179		장재만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732				



	-
1	
- 4	4 1.
- 1	٦,٠
- 1	- 5
	_

															_
38	"	"	"	806-15	답	559	806-22	180	4/5	장재만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732				
									1/5	장태수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141				
39	"	"	"	806-13	답	998	806-20	63		장재만	" 태성리 732				
40	"	"	"	797-3	답	2,430	797-9	79		이상렬	" 태성리 1019				
41	"	"	"	800-1	답	1,035	800-7	279	1/2	김정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903-17 기산@101-1105				
									1/2	이상선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1				
42	"	"	"	800-2	답	1,745	800-8	165	1/2	김정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903-17 기산@101-1105				
									1/2	이상선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1				\exists
43	"	"	"	800-4	답	1,299	800-9	21		유병선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371				
44	"	"	"	801-1	답	1,140	801-7	59		송하정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801-2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및 지상권	
45	"	"	"	801-2	답	1,653	801-8	54		송하정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801-2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및 지상권	
46	"	"	"	801-3	답	347	801-9	100		송하정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801-2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및 지상권	
47	"	"	"	801-6	답	661	801-10	140		여산송 씨소윤 씨소윤 지과학손 존중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023 (송영옥)				
48	"	"	"	803-1	답	1,332	803-7	96		여산송 씨소윤 씨소유 공파휘 옥후손 존중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023 (송영옥)				
49	"	"	"	803-2	답	2,251	803-8	51		장재만	" 태성리 732				
50	"	"	"	758-13	답	1,398	758-19	331		김용만	수원시영통구영통동967-2 신나무실풍림@603-303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51	"	"	"	758-12	답	2,162	758-18	98		장정호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125				
52	"	"	"	760-9	답	1,402	760-12	77		진영일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186-8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53	"	"	"	760-8	답	1,517	760-11	9		진영남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509				
54	"	"	"	764-1	답	1,187	764-9	293		김용만	수원시영통구영통동967-2 신나무실풍림@603-303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55	"	"	"	764-2	답	1,964	764-10	131	1/2	장유환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732				
									1/2	장태환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63-1				
56	"	"	"	765-1	답	1,987	765-6	274	1/2	정명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3 DMC이안상암2단지 1403				



익산시 🖄 시보



									1/2	정준희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4-1				
									1/2	011	주공@234-406				
57	"	"	"	765-2	답	1,924	765-7	49		이평임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829				
58	"	"	"	762-10	답	1,663	762-11	183		이일재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504-1215				
59	"	"	"	768-3	답	2,754	768-9	154		정찬희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2-20 자선메르시안@601호				
60	"	"	"	766-1	답	331	766-5	178		남봉환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208				
61	"	"	"	766-2	답	1,220	766-6	194		강양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56-39 삼성씨티빌 502호				
62	"	"	"	766-3	답	2,083	766-7	72		장재만	" 태성리 732				
63	"	"	"	766-4	답	377	766-8	173		장재만	" 태성리 732				
64	"	"	"	767-2	답	1,408	767-11	197		진영섭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732-9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65	"	"	"	767-3	답	2,008	767-12	84		진영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3 은하수@204-1501				
66	"	"	"	769-1	답	1,193	769-10	285		정찬희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2-20 자선메르시안@601호				
67	"	"	"	760-10	답	912	760-13	180		김용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967-2 신나무실풍림@603-303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68	"	"	"	763-8	답	1,842	763-20	191		진상덕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732-9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69	"	"	"	768-4	답	181	768-10	27		김선춘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999	한국 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논산지사)	근저당권	
70	"	"	"	795-2	답	2,258	795-8	28		김권수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891-1	여산 단위농협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근저당권	



익산시공고 제2010-165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정 공고

익산시 공고 제2008-117호(2008. 2. 15) 및 제2009-583호(2009. 4. 30)로 공고한 석왕천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일

익 산 시 장

					入	ት업개 요						
소하			사업	위치		٨	\업량(kr	n)	사업	기간		
소 천명			초	변	경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사업목적	비고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석왕천	석왕천 소하천 정비공사	석왕동 982	석왕동 159-2	석왕동 982	석왕동 117-5	2.6	2.6	_	2008. 1	2014. 12	일관된 개수계 획으로 재해예 방 및 생활환 경 개선	종 점 변경

■ 열람서류 : 정비계획도 및 위치도 등

■ 열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 열람장소 : 익산시청 재난안전과 (**☎**859-595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석왕천 소하천 정비공사

0710		토지소재	기 <u>권 ' </u>		공부상	편입.	토지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시	동	지번	지목	면적 (m')	지번	편입 면적 (m')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내 용	비고
	7	ᅨ				174필지	68,068							
1	익산	석왕	324-7	구	149	324-7	149		익산시					
2	익산	석왕	325-3	천	202	325-3	202		오근석	익산시 은기동 413				
3	익산	석왕	325-4	천	473	325-4	473		익산시					
4	익산	석왕	326-2	천	190	326-2	190		익산시					
5	익산	석왕	331-2	천	182	331-2	182		익산시					
6	익산	석왕	334-1	답	99	334-1	99		익산시					
7	익산	석왕	335-1	답	1712	335-1	1712		익산시					
8	익산	석왕	335-2	구	195	335-2	195		익산시					
9	익산	석왕	336-2	전	359	336-2	359		익산시					
10	익산	석왕	336-3	구	221	336-3	221		익산시					
11	익산	석왕	334-2	구	99	334-2	99		익산시					
12	익산	석왕	462	답	119	462	119		익산시					
13	익산	석왕	462-1	답	1458	462-1	1458		익산시					
14	익산	석왕	462-5	구	60	462-5	60		익산시					
15	익산	석왕	462-6	구	149	462-6	149		익산시					
16	익산	석왕	463-2	구	298	463-2	298		익산시					
17	익산	석왕	474	답	532	474	532		익산시					
18	익산	석왕	474-2	제	165	474-2	165		익산시					
19	익산	석왕	474-3	답	1021	474-3	1021		익산시					
20	익산	석왕	480	답	327	480	327		익산시					
21	익산	석왕	324-4	답	6648	324-13	461		익산시					



	_
-	A
1	ヒト
4	32
1	
	(

22	익산	석왕	324-5	답	4247	324-14	514		익산시	
23	익산	석왕	325-1	답	1868	325-5	274		익산시	
24	익산	석왕	325-2	답	4188	325-6	497		익산시	
25	익산	석왕	326-1	답	1944	326-9	332		익산시	
26	익산	석왕	331-1	답	2605	331-4	424		익산시	
27	익산	석왕	332	답	2083	332-1	679		익산시	
28	익산	석왕	333	답	2175	333-1	208		익산시	
29	익산	석왕	336-1	답	2954	336-4	1393		익산시	
30	익산	석왕	462-2	답	2340	462-7	1367	1/2	익산시	
								1/2	익산시	
31	익산	석왕	462-3	답	1309	462-8	119		익산시	
32	익산	석왕	462-3	답	1309	462-9	69		익산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3	익산	석왕	463-1	답	3131	463-3	636		익산시	
34	익산	석왕	475	답	3362	475-1	336		이영근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123-1
35	익산	석왕	476-2	답	767	476-5	281		익산시	
36	익산	석왕	476-3	제	374	476-6	136		익산시	<u> </u>
37	익산	석왕	476-4	답	2850	476-7	890	3/9	익산시	
								2/9	익산시	
								2/9	익산시	
								2/9	익산시	
38	익산	석왕	478-2	답	4165	478-3	1712	3/9	익산시	
								2/9	익산시	2 1
								2/9	익산시	
								2/9	익산시	2010년 2월 12월
39	익산	 석왕	479-2	 답	5448	479-4	2574		익산시	
40	익산	석왕	481-2	답	3431	481-4	522		익산시	
41	익산	석왕	482-2	답	2593	482-4	1391		익산시	
41	익산	석왕	482-2	답	2593	482-4	1391		익산시	



의산시 🖄 서보

1	Ą.
1	ڪر

						т—								
42	익산	석왕	21-1	답	337	21-9	36	1/3	이현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14			<u> </u>	
					<u> </u>			1/3	이열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14			<u> </u>	
				<u> </u>				1/3	이윤배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14				
43	익산	석왕	21-3	답	4188	21-10	195		익산시				 	
44	익산	석왕	35-3	답	1763	35-6	324		오두영	익산시 부송동 75-3				
45	익산	석왕	75	답	2,932	75-5	937		최길락	익산시 동산동 87-2 삼호@ 6-702				
46	익산	석왕	75-1	답	3,283	75-6	1,611		배상순	익산시 석왕동 산158-15				
47	익산	석왕	75-2	답	3,772	75-7	535		최길락	익산시 동산동 87-2 삼호@ 6-702				
48	익산	석왕	75-3	답	3,045	75-8	793		익산시					
49	익산	석왕	75-4	답	2,407	75-9	705		익산시					
50	익산	석왕	98-2	답	4,783	98-4	2,210		최종우	익산시 팔봉동 255				
51	익산	석왕	99	답	2,979	99-1	50		소병직	익산시 영등동 529-159	이리농협	익산시 인화동2가 95-1	근저당권	
52	익산	석왕	102-1	답	5,891	102-7	1,179		익산시					
53	익산	석왕	102-2	답	2,714	102-8	526		서일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8 현대@ 106-608				
54	익산	석왕	102-3	답	1,345	102-9	209		진갑찬	익산시 석왕동 150			1	
55	익산	석왕	102-4	답	2,774	102-10	408		문미숙	익산시 어양동 695 어양주공6단지 601-1005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지상권	
56	익산	석왕	117-5	답	1,352	117-6	490		익산시					
57	익산	석왕	211-1	답	4,855	211-4	587		박효정	군산시 나운동 109-6 나운4차현대@404-1606	전북은행효자 동지점	전에 1927급등 600-2	지상권	
58	익산	석왕	211-1	답	4,855	211-5	10		박효정	군산시 나운동 109-6 나운4차현대@404-1606	전북은행효자 동지점	전취 약구 감동 669-2	근저당및 지상권	
59	익산	석왕	211-2	답	3,131	211-6	1,094	l l	서석현	익산시 모현동1가 303-1 2차현대@207-910	이리농협	익산시 남중동 222-3	근저당권	
60	익산	석왕	214-1	답	1,990	214-3	136		이명자	전주시 서서학동 272-4				
61	익산	석왕	215	답	2,030	215-1	1,161		이명자	전주시 서서학동 272-4				
62	익산	석왕	216-1	답	3,501	216-3	902		남구영구	익산시 석왕동 282				
63	익산	석왕	216-2	답	2,734	216-4	236		남궁상	익산시 팔봉동 304 기안파인골드빌107-1103				
64	익산	석왕	217	답	1,712	217-1	565		경주이씨 봉사공파 종중	익산시 월성동 81-2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미분할



$\Lambda \sim$
15.1
1 -
1

												,		
65	익산	석왕	220-5	답	1,808	220-20	310		강성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69-7 영창@2-204				
66	익산	석왕	220-6	답	1,377	220-21	13		황철주	익산시 석왕동 68				
67	익산	석왕	220-8	답	4,604	220-22	661	1/2	김경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3-7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미분할
								1/2	김경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우성@113-701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미분할
68	익산	석왕	220-9	답	2,378	220-23	1,010		박영전	익산시 석왕동 66-1	이리농협	익산시 남중동 222-3	근저당권	
69	익산	석왕	220-13	답	485	220-24	185		황철주	익산시 석왕동 68				
70	익산	석왕	220-15	구	103	220-25	32		소병곤					
71	익산	석왕	228	답	2,483	228-1	966		김구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38-2				
72	익산	석왕	229	답	2,354	229-1	621		신순복	익산시 남중동 36-39				
73	익산	석왕	230	답	2,902	230-1	14		경주이씨 봉사공파 종중	익산시 월성동 81-2				
74	익산	석왕	231	답	1,673	231-1	4		권규하	익산시 모현동1가 296-2 4차현대@402-303				
75	익산	석왕	234	답	3,005	234-28	1,273		김춘호	익산시 팔봉동 304 기안파인골드빌105-502	이리농협	익산시 인화동2가 95-1	근저당권	
76	익산	석왕	234-1	답	5,438	234-29	791		제옥례	익산시 마동 181-90				
77	익산	석왕	234-2	답	2,707	234-30	6		이용	익산시 석왕동 61				
78	익산	석왕	234-8	답	1,408	234-31	5		이철규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94-10 301호				
79	익산	석왕	240-2	답	1,640	240-5	17		익산시					
80	익산	석왕	240-3	답	3,263	240-6	443		오석천	익산시 석왕동 174				
81	익산	석왕	251-1	답	1,759	251-4	282		김미안	익산시 은기동 456				
82	익산	석왕	252-4	답	5,458	252-8	990		익산시					
83	익산	석왕	252-4	답	5,458	252-9	169		익산시					
84	익산	석왕	253-1	답	4,030	253-3	801		익산시					
85	익산	석왕	253-1	답	4,030	253-4	67		익산시					
86	익산	석왕	254-1	답	3,445	254-4	261		익산시					
87	익산	석왕	255-1	답	2,826	255-6	695		익산시					
88	익산	석왕	255-4	답	1,464	255-7	784		익산시					
89	익산	석왕	256-4	답	2,521	256-5	14		익산시					



R	
	ı

										·				
90	익산	석왕	257-3	답	3,269	257-7	330		이회기	익산시 석왕동 422-3	이리농협	익산시 남 중동 222-3	근저당권	
91	익산	석왕	258-3	답	2,476	258-7	690		익산시					
92	익산	석왕	259-4	답	1,891	259-6	521	1/2	익산시					
								1/2	서상석	익산시 석왕동 196	이리농협	익산시 인화동2가 95-1	근저당권	
93	익산	석왕	260	답	3,250	260-1	639		익산시					
94	익산	석왕	261	답	3,359	261-1	86		장미숙	익산시 영등동 682 동신@107-1008				
95	익산	석왕	262-1	답	4,721	262-5	1,931		오계욱	익산시 영등동 815 부영@302-1503				
96	익산	석왕	262-3	답	2,945	262-6	702		오재권	익산시 은기동 456				
97	익산	석왕	263	답	2,083	263-1	89	1/2	장미숙	익산시 영등동 682 동신@107-1008				
								1/2	오병섭	익산시 영등동 682 동신@107-1008				
98	익산	석왕	298-1	답	3,137	298-3	144		오재권	익산시 은기동 456	익산농협 팔봉지점	익산시 인화동2가 95-1	근저당권	
99	익산	석왕	299	답	2,397	299-12	407		오한섭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지상권	미분할
100	익산	석왕	299-2	답	1,560	299-13	600		최종택	익산시 부송동 632	이리농협	익산시 남중동 222-3	근저당권	
101	익산	석왕	300-1	답	1,765	300-5	297		이종산	익산시 석왕동 422-3				
102	익산	석왕	300-3	답	813	300-6	241		이종산	익산시 석왕동 422-3				
103	익산	석왕	301-1	답	909	301-5	151		오근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8 대흥빌라 302호				
104	익산	석왕	301-3	답	698	301-6	189		오근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8 대흥빌라 302호				
105	익산	석왕	302-1	답	3,121	302-5	194		오근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8 대흥빌라 302호				
106	익산	석왕	302-3	답	1,960	302-6	704		안찬수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3	구천동농협 농협중앙회 임석산 최명규	무주군 설련 소환리 904-34 서울시 중구 충정로 17175 악산시 팔봉동 269 군산시 문화동 897-9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107	익산	석왕	303-4	답	1,881	303-5	920		소익섭	익산시 은기동 317	익산원협	악산시 안화동1가 132-110	근저당및 지상권	
108	익산	석왕	304-1	답	2,780	304-3	296		오재권	익산시 은기동 456	이리농협 팔봉지점	익산시 인화동2가 95-1	근저당권	
109	익산	석왕	307-3	답	2,090	307-8	149		김필례	익산시 남중동 393-9	이리농협	익산시 남중동 222-3	근저당권	
110	익산	석왕	308-1	답	1,881	308-10	223		이종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89-5 홍건삼천2차@ 202-1404				
111	익산	석왕	308-2	답	1,369	308-11	522		이종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89-5 흥건삼천2차@ 202-1404				



1	\sim
- 1	14,77
- 1	_
	_

	-				1	,			1	T	ı		ı	
112	익산	석왕	308-3	답	592	308-12	328		이진	익산시 영등통714-1영등신일아파트 103동1307				
113	익산	석왕	308-6	답	50	308-13	45		이진	익산시 영등동714-1영등신일아파트 103동1307				
114	익산	석왕	309-1	답	767	309-6	231		이진	익산시 영등동714-1영등신일아파트 103동1307				
115	익산	석왕	310-1	답	3,121	310-5	415	1/2	익산시					
								1/2	익산시					
116	익산	석왕	311	답	1,620	311-1	594		소진성	익산시 남중동 540-43				
117	익산	석왕	312-1	답	5,536	312-4	337	2/3	박재희	익산시 모현동1가303-1 2차현대@ 206-1204	이리농협	익산시 남중동 222-3	근저당권	
								1/6	정계호	익산시 목천동 712-25				
								1/6	지선희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3				
118	익산	석왕	315-9	답	919	315-25	84		이종학	익산시 석왕동 394				
119	익산	석왕	315-12	답	1,684	315-26	2		이진	익산시 영등동714-1영등신일이과트 103동1307				
120	익산	석왕	320-1	답	2,164	320-6	23		이종원	익산시 석왕동 373				
121	익산	석왕	324-5	답	3,733	324-15	413		홍성호	익산시 어양동 709 익신자이@ 107-1502				
122	익산	석왕	326-1	답	1,612	326-10	132		오석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 서광@101-606				
123	익산	석왕	327-2	답	2,224	327-7	10		오석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 서광@101-606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지상권	미분할
124	익산	석왕	100	답	142	100	142		이정희	익산시 부송동 242 오페라하우스 101-1205				
125	익산	석왕	101	답	126	101	126		익산시					
126	익산	석왕	214-2	답	3,213	214-2	3,213		오상욱	익산시 은기동 433-1	이리농협 팔봉지점	익산시 인화동2가 95-1	근저당및 지상권	
127	익산	석왕	220-7	구	71	220-7	71		소병곤					
128	익산	석왕	220-14	구	39	220-14	39		소병곤					
129	익산	석왕	220-16	구	55	220-16	55		소병곤					
130	익산	석왕	220-17	구	241	220-17	241		소병곤					
131	익산	석왕	252-1	답	13	252-1	13		이충기	광주시 북구 두암동 854-22				
132	익산	석왕	252-3	구	99	252-3	99		이충기	광주시 북구 두암동 854-22				
133	익산	석왕	252-5	구	23	252-5	23		이충기	광주시 북구 두암동 854-22				
134	익산	석왕	252-6	구	106	252-6	106		이충기	광주시 북구 두암동 854-22				
									l	1		l		



1	١٠.
1	_>

135	익산	석왕	253-2	구	116	253-2	116		익산시					
136	익산	석왕	254-2	구	89	254-2	89		익산시					
137	익산	석왕	254-3	답	26	254-3	26		익산시					
138	익산	석왕	255-2	구	66	255-2	66		익산시					
139	익산	석왕	255-3	구	10	255-3	10		소만엽	익산시 마동 225				
140	익산	석왕	255-5	구	7	255-5	7		익산시					
141	익산	석왕	257-1	답	13	257-1	13		이회기	익산시 석왕동 111				
142	익산	석왕	257-2	구	109	257-2	109		이회기	익산시 석왕동 111				
143	익산	석왕	257-5	답	7	257-5	7		이회기	익산시 석왕동 111				
144	익산	석왕	258-1	구	3	258-1	3	1/2	서상석	익산시 석왕동 196				
								1/2	익산시					
145	익산	석왕	258-2	답	93	258-2	93	1/2	서상석	익산시 석왕동 196				
								1/2	익산시					
146	익산	석왕	259-1	답	7	259-1	7	1/2	서상석	익산시 석왕동 196				
								1/2	익산시					
147	익산	석왕	259-3	구	99	259-3	99	1/2	서상석	익산시 석왕동 196	이리농협	익산시 인화동2가 95-1	근저당권	
								1/2	익산시					
148	익산	석왕	262-2	구	198	262-2	198		오계욱	익산시 영등동 815 부영아파트 302-1503				
149	익산	석왕	299-4	답	119	299-4	119		최종택	익산시 석왕동 374				
150	익산	석왕	299-6	구	149	299-6	149		이종명	익산시 석왕동 111				
151	익산	석왕	299-9	구	162	299-9	162		오상길	익산시 은기동 429				
152	익산	석왕	301-2	구	99	301-2	99		오근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8 대흥빌라 302호				
153	익산	석왕	302-2	구	165	302-2	165		오근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8 대흥빌라 302호				
154	익산	석왕	303-2	구	367	303-2	367		소익섭	익산시 은기동 317				
155	익산	석왕	304-2	구	132	304-2	132		오상인	익산시 은기동 398				
156	익산	석왕	307-4	도	172	307-4	172		오용기	익산시 은기동 397				
157	익산	석왕	307-6	도	132	307-6	132		오용기	익산시 은기동 397				
157	익산	식왕	307-6	노	132	307-6	132		오봉기	박산사 은기동 397				



- 136 -

,	~
- [*	٦Į:
١.	_

158	익산	석왕	308-4	구	60	308-4	60	이종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89-5 흥건삼천2차@
100	116	1.0	000 1	'	00	000 1		100	202-1404
159	익산	석왕	315-10	구	10	315-10	10	이종인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834-16
160	익산	석왕	315-17	도	53	315-17	53	이종인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834-16
161	익산	석왕	315-18	도	36	315-18	36	이종인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834-16
162	익산	석왕	315-19	도	63	315-19	63	이종인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834-16
163	익산	석왕	315-20	도	13	315-20	13	이병옥	익산시 석왕동 391
164	익산	석왕	315-21	도	13	315-21	13	이종인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834-16
165	익산	석왕	316-2	도	50	316-2	50	김홍식	의산시 석왕동 423
166	익산	석왕	316-3	도	56	316-3	56	이종희	의산시 석왕동 394
167	익산	석왕	320-4	도	73	320-4	73	이정기	의산시 석왕동 373
168	익산	석왕	324-8	도	119	324-8	119	홍성호	익산시 어양동 709 익산자이@ 107-1502
169	익산	석왕	324-9	도	10	324-9	10	홍성호	익산시 어양동 709 익산자이@ 107-1502
170	익산	석왕	326-3	도	10	326-3	10	오석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 서광@101-606
171	익산	석왕	326-4	도	102	326-4	102	오석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 서광@101-606
172	익산	석왕	326-5	도	40	326-5	40	오석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 서광@101-606
173	익산	석왕	326-6	도	102	326-6	102	오석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 서광@101-606
174	익산	석왕	327-4	도	13	327-4	13	심원택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429



익산시공고 제2010-227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인)

1.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내용

				도로	구간			개발	계획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지정 사유
삼기	면도	용연선	101ই	기산리 145-1번지	용연리 1305번지	3.4	_	8.0	6.5	선형개량 공사

-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 2012. 12. 30
-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시청 건설과 (☎063-859-5533)

4. 토지세목조서 : 붙임내역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스	는재지			면적	(m²)	j	토지 소유자		관계	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삼기	용연	7-46	도	21	13	전라북도					
2	삼기	용연	7-47	도	116	41	전라북도					
3	삼기	용연	7-48	전	4	4	익산시					
4	삼기	용연	8-12	임	1,497	1,497	익산시					
5	삼기	용연	8-13	전	894	894	익산시					
6	삼기	용연	46-2	도	26	26	익산시					
7	삼기	용연	51-2	도	23	23	익산시					
8	삼기	용연	52-2	도	33	33	익산시					
9	삼기	용연	52-4	묘	269	245	익산시					
10	삼기	용연	53-1	대	174	174	김춘성	부송동 231-26 동아아파트 2차 201-1902				
11	삼기	용연	54-3	대	45	45	익산시					
12	삼기	용연	59-2	도	56	56	익산시					
13	삼기	용연	59-3	대	236	236	익산시					
14	삼기	용연	63-5	답	192	192	익산시					
15	삼기	용연	66-2	도	63	44	익산시					
16	삼기	용연	66-3	답	754	754	익산시					
17	삼기	용연	73-3	답	279	279	익산시					
18	삼기	용연	73-4	전	60	60	익산시					
19	삼기	용연	77-2	임	3,825	3	익산전주최씨 익천공파종중	595				
20	삼기	용연	77-6	임	87	21	익산시					
21	삼기	용연	77-7	도	87	87	익산시					
22	삼기	용연	77-9	전	78	78	최규만 외3인	346				
23	삼기	용연	77-10	전	164	164	최규만 외3인	346				
24	삼기	용연	78-3	도	76	76	익산시					
25	삼기	용연	78-4	도	291	291	익산시					
26	삼기	용연	92-2	도	886	271	익산시					
27	삼기	용연	92-6	전	223	10	익산시					
28	삼기	용연	92-7	도	253	166	익산시					
29	삼기	용연	307-2	도	26	26	익산시					
30	삼기	용연	307-5	임	7	7	오견록	233				
31	삼기	용연	332-9	도	370	251	익산시					
32	삼기	용연	332-19	도	3	3	익산시					
33	삼기	용연	332-20	전	187	187	최규용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 36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²)	j	토지 소유자	관7		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34	삼기	용연	332-21	도	34	34	익산시					
35	삼기	용연	332-22	도	261	261	익산시					
36	삼기	용연	469-8	임	158	158	익산시					
37	삼기	용연	469-9	전	69	69	익산시					
38	삼기	용연	469-10	전	394	394	익산시					
39	삼기	용연	471-3	전	50	50	익산시					
40	삼기	용연	471-4	전	154	154	익산시					
41	삼기	용연	473-1	전	324	324	익산시					
42	삼기	용연	474-12	도	205	205	익산시					
43	삼기	용연	474-13	도	109	109	익산시					
44	삼기	용연	474-14	도	10	10	익산시					
45	삼기	용연	474-15	전	32	32	익산시					
46	삼기	용연	474-16	전	94	94	익산시					
47	삼기	용연	474-17	전	81	81	익산시					
48	삼기	용연	475-3	도	126	126	익산시					
49	삼기	용연	475-4	도	60	60	익산시					
50	삼기	용연	475-5	전	639	639	익산시					
51	삼기	용연	475-6	전	3	3	익산시					
52	삼기	용연	476-6	전	51	51	이병구	금마면 갈산리 48				
53	삼기	용연	476-23	도	3	3	익산시					
54	삼기	용연	476-24	도	53	53	익산시					
55	삼기	용연	476-25	도	86	86	익산시					
56	삼기	용연	476-26	도	17	17	익산시					
57	삼기	용연	476-27	도	56	56	익산시					
58	삼기	용연	476-30	답	9	9	익산시					
59	삼기	용연	476-31	임	25	25	기노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2 명일엘지이파트 101동 1013호				
60	삼기	용연	476-32	임	21	21	기노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2 명일엘지아파트 101동 1013호				
61	삼기	용연	476-33	전	41	41	익산시					
62	삼기	용연	476-34	전	104	104	익산시					
63	삼기	용연	476-35	전	14	14	익산시					
64	삼기	용연	476-36	전	202	202	익산시					
65	삼기	용연	476-37	전	307	307	익산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²)	j	토지 소유자		관계	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66	삼기	용연	476-38	전	68	68	익산시					
67	삼기	용연	476-39	전	512	512	익산시					
68	삼기	용연	476-40	전	148	148	익산시					
69	삼기	용연	476-41	전	193	193	익산시					
70	삼기	용연	476-42	전	63	63	익산시					
71	삼기	용연	547-1	도	1,557	1,557	익산시					
72	삼기	용연	571-42	도	46	46	익산시					
73	삼기	용연	571-43	도	407	407	익산시					
74	삼기	용연	571-45	도	258	258	익산시					
75	삼기	용연	571-47	도	23	13	익산시					
76	삼기	용연	571-57	도	2,197	2,197	익산시					
77	삼기	용연	571-58	도	756	756	익산시					
78	삼기	용연	571-60	도	4	4	익산시					
79	삼기	용연	571-63	도	3	3	익산시					
80	삼기	용연	578-2	도	73	73	익산시					
81	삼기	용연	582-14	도	159	159	익산시					
82	삼기	용연	582-16	도	182	182	익산시					
83	삼기	용연	582-17	도	76	76	익산시					
84	삼기	용연	582-18	도	139	81	익산시					
85	삼기	용연	582-20	도	288	7	익산시					
86	삼기	용연	582-26	도	51	51	익산시					
87	삼기	용연	582-32	도	8	8	익산시					
88	삼기	용연	602-1	도	4	4	익산시					
89	삼기	용연	603-1	도	42	42	익산시					
90	삼기	용연	613-31	도	33	33	익산시					
91	삼기	용연	613-41	도	569	569	익산시					
92	삼기	용연	613-43	도	3,651	3,651	익산시					
93	삼기	용연	613-45	임	193	4	익산시					
94	삼기	용연	613-50	도	180	180	익산시					
95	삼기	용연	613-56	도	57	57	익산시					
96	삼기	용연	653-2	도	321	132	익산시					
97	삼기	용연	653-6	도	48	48	익산시					
98	삼기	용연	655-2	도	17	17	익산시					
99	삼기	용연	655-3	도	868	868	익산시					
100	삼기	용연	656-2	도	23	23	익산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²)	j	토지 소유자	관		관계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01	삼기	용연	658-2	도	20	20	익산시					
102	삼기	용연	659-2	도	33	33	진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584				
103	삼기	용연	661-7	전	170	170	최재호 외3인	산28				
104	삼기	용연	661-8	도	109	109	익산시					
105	삼기	용연	662-8	도	635	635	익산시					
106	삼기	용연	662-12	도	132	132	익산시					
107	삼기	용연	662-13	도	221	221	익산시					
108	삼기	용연	662-15	도	50	50	익산시					
109	삼기	용연	662-27	도	54	54	익산시					
110	삼기	용연	662-28	도	164	164	익산시					
111	삼기	용연	662-29	임	171	171	최영애	왕궁면 평장리 47				
112	삼기	용연	662-30	임	24	24	최영애	왕궁면 평장리 47				
113	삼기	용연	662-31	도	109	109	익산시					
114	삼기	용연	662-32	도	246	246	익산시					
115	삼기	용연	662-33	전	36	36	익산시					
116	삼기	용연	662-35	도	22	22	익산시					
117	삼기	용연	662-36	대	2	2	박종순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662-10				
118	삼기	용연	665-2	도	76	76	익산시					
119	삼기	용연	665-3	도	17	17	익산시					
120	삼기	용연	665-4	도	13	13	익산시					
121	삼기	용연	665-5	도	36	36	익산시					
122	삼기	용연	667-6	도	3	3	익산시					
123	삼기	용연	895-9	전	31	7	동복오씨 시무자손문중	간촌리 485				
124	삼기	용연	895-17	도	4,845	4,845	익산시					
125	삼기	용연	895-21	도	307	307	익산시					
126	삼기	용연	895-23	도	1,124	29	익산시					
127	삼기	용연	895-25	도	1,338	120	익산시					
128	삼기	용연	895-33	도	258	184	익산시					
129	삼기	용연	895-34	도	160	87	익산시					
130	삼기	용연	895-35	임	81	81	동복오씨 시무자손문중	간촌리485				
131	삼기	용연	895-36	도	88	88	익산시					
132	삼기	용연	1093-2	도	107	107	익산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2)	Ē	토지 소유자	관:		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33	삼기	용연	1094-1	도	863	863	익산시					
134	삼기	용연	1094-2	도	274	274	익산시					
135	삼기	용연	1095-3	도	120	81	익산시					
136	삼기	용연	1097-2	도	264	264	익산시					
137	삼기	용연	1098-1	도	117	117	익산시					
138	삼기	용연	1100-2	도	596	596	익산시					
139	삼기	용연	1108-1	도	211	211	익산시					
140	삼기	용연	1109-1	도	6	6	익산시					
141	삼기	용연	1109-4	도	1	1	익산시					
142	삼기	용연	1184-1	도	412	412	익산시					
143	삼기	용연	1188-2	답	52	52	윤익수	이리시 월성동 369				
144	삼기	용연	1188-3	灹	12	12	익산시					
145	삼기	용연	1193-1	도	690	690	익산시					
146	삼기	용연	1195-4	답	209	209	김용배	이리시 월성동 401				
147	삼기	용연	1296-1	도	22,981	1,300	국(농람수산식품부)					
148	삼기	용연	1303-1	뇌	175	175	국(농림수산식품부)					
149	삼기	용연	1305	구	148,969	883	국(농림수산식품부)					
150	삼기	용연	1306	버	175	175	국(국토해양부)					
151	삼기	용연	1307	도	93	93	국(국토해양부)					
152	삼기	용연	1309	도	1,226	1,226	국(국토해양부)					
153	삼기	용연	1310	도	922	922	국(국토해양부)					
154	삼기	용연	1311-23	답	110	110	익산시					
155	삼기	용연	1311-24	답	24	24	국(농림수산식품부)					
156	삼기	용연	1313-10	답	659	586	익산시					
157	삼기	용연	1313-11	답	625	625	익산시					
158	삼기	용연	1314-14	답	346	346	익산시					
159	삼기	용연	1314-15	답	71	71	익산시					
160	삼기	용연	1352	구	4,066	939	국(농림수산식품부)					
161	삼기	용연	1353	도	6,036	2,476	국(농림수산식품부)					
162	삼기	용연	1355	구	298	95	국(농림수산식품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²)	Ē	토지 소유자		관계	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63	삼기	용연	1356	구	1,111	156	국(농람수산식품부)					
164	삼기	용연	1359	도	1,084	23	국(농림수산식품부)					
165	삼기	용연	1360	구	8,727	34	국(농림수산식품부)					
166	삼기	용연	산4-4	임	347	320	익산시					
167	삼기	용연	산5-1	임	693	693	익산시					
168	삼기	용연	산6-4	임	615	615	익산시					
169	삼기	용연	산15-19	임	202	202	익산시					
170	삼기	용연	산17-4	임	922	922	익산시					
171	삼기	용연	산18-8	임	99	99	익산시					
172	삼기	용연	산21-5	임	326	326	익산시					
173	삼기	용연	산22-5	임	596	596	익산시					
174	삼기	용연	산23-3	임	60	60	익산시					
175	삼기	용연	산23-9	임	99	99	익산시					
176	삼기	용연	산23-12	임	99	99	익산시					
177	삼기	용연	산23-17	임	99	99	익산시					
178	삼기	용연	산26-11	임	1,254	1,254	익산시					
179	삼기	용연	산27-9	임	429	429	익산시					
180	삼기	용연	산28	임	6,661	471	최동섭 외14인	이리시 부송동 608				
181	삼기	용연	산28-1	임	30	30	최동섭 외3인	이리시 부송동 608				
182	삼기	용연	산28-2	임	301	301	최동섭 외3인	이리시 부송동 608				
183	삼기	기산	산145-1	도	1,190	602	전라북도					
184	삼기	기산	산145-3	도	1,700	46	전라북도					
185	삼기	간촌	1-12	전	90	90	익산시					
186	삼기	간촌	1-13	전	839	839	익산시					
187	삼기	간촌	산45-1	임	1,641	1,641	익산시					
188	삼기	간촌	산45-2	임	77	30	전라북도					
189	삼기	간촌	산45-3	임	289	233	최병석 외2인	239				
190	삼기	간촌	산46-4	임	420	420	익산시					
191	삼기	간촌	산47-5	임	103	103	익산시					
192	삼기	간촌	산48	임	44	44	익산시					
193	삼기	간촌	산49-11	임	646	646	익산시					
194	삼기	간촌	산49-12	임	244	244	최동렬 외1인 239					
195	삼기	용연	-	-	-	65						미등록
196	삼기	용연	-	ı	ı	106						미등록





익산시공고 제2010-228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익 산 시 장 (인)

1.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내용

				도로	구간			개발	계획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지정 사유
삼기	리도	대갈선	209호	기산리 839-2번지	용연리 92-2번지	1.6	-	8.0	6.5	선형개량 공사

-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 2012. 12. 30
-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시청 건설과 (☎063-859-5533)

4. 토지세목조서 : 붙임내역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²)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삼기	기산	837-1	답	273	26	전라북도					
2	삼기	기산	839-2	대	116	83	익산시					
3	삼기	기산	841-1	전	176	39	전라북도					
4	삼기	기산	841-3	전	474	125	전라북도					
5	삼기	기산	842-55	임	1,499	1,499	박종호 외1인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170-17				
6	삼기	기산	843-3	도	33	17	김종진	전주군 전주면				
7	삼기	기산	843-5	답	106	50	익산시					
8	삼기	기산	843-6	답	1,087	301	전라북도					
9	삼기	기산	845-1	답	2,322	7	진양정씨은열 공파기산종중	174				
10	삼기	기산	845-2	도	212	204	익산시					
11	삼기	기산	845-5	답	547	541	익산시					
12	삼기	기산	845-6	답	700	462	전라북도					
13	삼기	기산	845-7	답	24	24	진양정씨은열 공파기산종중	174				
14	삼기	기산	846	전	969	2	이기순	남충동492-6				
15	삼기	기산	846-3	전	49	49	박종호 외1인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170-17				
16	삼기	기산	848-10	전	119	80	고두석	부송동1084-1				
17	삼기	기산	848-13	전	4	4	익산시					
18	삼기	기산	848-15	전	311	300	익산시					
19	삼기	기산	848-17	전	46	46	익산시					
20	삼기	기산	848-18	전	300	293	박종호 외1인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170-17				
21	삼기	기산	849	전	30	29	정세환	568				
22	삼기	기산	849-6	구	139	13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	삼기	기산	849-7	전	3	3	전라북도					
24	삼기	기산	849-8	전	129	129	익산시					
25	삼기	기산	849-9	구	39	39	익산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²)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26	삼기	기산	849-10	구	46	46	익산시					
27	삼기	기산	849-11	전	150	150	박종호	전라북도 익산시				
		, _			_		외1인 박종호	남중동 170-17 전라북도 익산시				
28	삼기	기산	849-12	구	64	64	의1인	남중동 170-17				
29	삼기	기산	850-1	대	57	57	김의태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820				
30	삼기	기산	851-17	전	24	9	오석문	금마면 갈산리209				
31	삼기	기산	851-23	전	586	194	익산시					
32	삼기	기산	851-24	전	63	63	익산시					
33	삼기	기산	851-25	전	189	161	익산시					
34	삼기	기산	851-26	전	417	96	익산시					
35	삼기	기산	851-31	전	39	39	박종호 외1인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170-17				
36	삼기	기산	851-32	전	45	45	박종호 외1인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170-17				
37	삼기	기산	853-1	도	17	13	국 (국토해양부)					
38	삼기	기산	860-2	도	13	13	진성도	서두리 129				
39	삼기	기산	875-24	전	76	76	익산시					
40	삼기	기산	895-8	구	396	33	국(농림수산 식품부)					
41	삼기	기산	900-1	도	1,124	261	국(농림수산 식품부)					
42	삼기	기산	900-2	구	106	106	국(농림수산 식품부)					
43	삼기	기산	900-3	도	36	36	국(농림수산					
44	삼기		900-5		1,408	329	국(농림수산 식품부)					
45	삼기		954-16	답	274	205	익산시					
46	삼기	기산	954-17	답	974	541	전라북도					
47	삼기	기산	1003	구	5,474	44	국(농림수산 식품부)					
48	삼기	기산	1004-1	도	266	94	국(농림수산 식품부)					
49	삼기	기산	1005-1	구	93	93	박종호 외1인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170-17				
50	삼기	기산	1023	도	186	68	국(농림수산 식품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²)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51	삼기	기산	1024	되	840	25	국(농림수산 식품부)					
52	삼기	기산	산181-7	임	625	331	익산시					
53	삼기	기산	산181-8	입	658	658	익산시					
54	삼기	기산	산181-9	임	531	531	주방식	용연리 259				
55	삼기	기산	산183-15	구	55	36	주방식	용연리 259				
56	삼기	기산	산183-16	임	53	53	주방식	용연리 259				
57	삼기	기산	산184-3	임	193	142	최춘호	함열읍와리121 -1				
58	삼기	기산	산184-7	임	42	42	익산시					
59	삼기	기산	산184-8	임	18	18	주방식	용연리 259				
60	삼기	기산	산185-1	임	758	498	익산시					
61	삼기	기산	산186-1	임	198	198	최규석 외3인	팔봉면 정족리 8				
62	삼기	기산	산187-10	임	1,521	931	익산시					
63	삼기	기산	산192-7	임	86	86	최경렬	용연리 293				
64	삼기	기산	_	1	_	13						미등록
65	삼기	용연	72-5	전	128	128	익산시					
66	삼기	용연	77-6	임	87	66	익산시					
67	삼기	용연	92-2	片	886	330	익산시					
68	삼기	용연	92-5	임	33	33	최복렬 외5인	금마면 갈산리 218				
69	삼기	용연	92-6	전	223	203	익산시					
70	삼기	용연	97-2	전	77	77	익산시					
71	삼기	용연	97-3	도	46	46	익산시					
72	삼기	용연	97-4	전	17	17	주형길	291				
73	삼기	용연	97-5	전	19	19	주형길	291				
74	삼기	용연	98-3	대	66	66	익산시					
75	삼기	용연	98-4	전	413	413	익산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m²)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76	삼기	용연	98-5	전	123	123	익산시					
77	삼기	용연	98-6	대	112	112	주형길	291				
78	삼기	용연	99-4	전	514	514	익산시					
79	삼기	용연	104-3	전	6	6	익산시					
80	삼기	용연	105-3	전	360	360	익산시					
81	삼기	용연	120-11	전	57	57	전주최씨목사 공파익산종중	374				
82	삼기	용연	120-12	전	453	453	전주최씨목사 공파익산종중	374				
83	삼기	용연	120-13	전	805	747	전주최씨목사 공파익산종중	374				
84	삼기	용연	120-14	전	73	73	전주최씨목사 공파종중	374				
85	삼기	용연	120-15	전	87	87	전주최씨목사 공파익산문중	374				
86	삼기	용연	120-16	전	165	165	전주최씨목사 공파익산종중	374				
87	삼기	용연	123-21	전	2	2	오석문	금마면 갈산리 209				
88	삼기	용연	1296-1	도	22,981	26	국(농림수산 식품부)					
89	삼기	용연	1385	도	912	4	국(농림수산 식품부)					
90	삼기	용연	1387	도	326	112	국(농림수산 식품부)					
91	삼기	용연	1388-1	구	24	24	국(농림수산 식품부)					
92	삼기	용연	산34-3	임	242	242	익산시					
93	삼기	용연	산40-1	임	670	670	익산시					
94	삼기	용연	산41-5	임	1,030	1,030	익산시					
95	삼기	용연	산42-10	임	270	270	전주최씨목사 공파익산문중	374				
96	삼기	용연	산42-18	임	659	659	익산시					
97	삼기	용연	산42-20	임	7	7	전주최씨목사 공파익산문중	374				
98	삼기	용연	산43-1	임	1,296	1,204	익산시					
99	삼기	용연	산43-3	임	353	259	전주최씨목사 공파익산문중	374				
100	삼기	용연	산44-5	임	143	32	익산시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물건조서

							물건	<u></u>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1	삼기면 기산리	산184-4 산184-7 851-23 851-24 851-31	측백나무		120	m²	최춘호	익산시 함열읍 와리 121-1				
2		산181-9 산181-8	양계장	철골(파이프) 1동	825	m²	주방식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259				
3		848-18 848-15	인삼밭		388	m²	이기순	익산시 남중동 492-6				
4	삼기면 기산리	842-55	분묘		3	7]	박종호 외 1인	익산시 남중동 170-17				



